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97호
2017. 3. 2.(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7-516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 고 시

제2017-6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서울시립대학교)	6
제2017-63호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1
제2017-6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3
제2017-66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변경 고시 ...	14
제2017-67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정 고시	15
제2017-68호 도시철도 역명 제정 확정 고시	16
제2017-69호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6
제2017-70호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9
제2017-71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36
제2017-72호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	37
제2017-7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46
제2017-74호 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9
제2017-75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지구 정비 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9
제2017-77호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67

◆ 공 고

제2017-43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76
제2017-44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76
제2017-466호 2017년도 제4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77
제2017-467호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80
제2017-468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94
제2017-47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103
제2017-482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103

제2017-518호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공모 공고	104
제2017-5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공사완료 공고	106

◆ 구 고 시

제2017-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광진구)	108
제2017-20호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광진구)	109
제2017-24호 도시계획시설[둘리(쌍문)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도봉구) ...	112
제2017-3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마포구)	114
제2017-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서구)	116
제2017-1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서구)	120
제2017-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남구)	122
제2017-30호 도시관리계획[역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강남구)	124

◆ 구 공 고

제2017-19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 청취 공고(광진구)	126
제2017-217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강북구)	127
제2017-231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북구)	129
제2017-2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강북구)	133
제2017-2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은평구) ...	135
제2017-192호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마포구)	136
제2017-26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천마공원(대체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송파구)	138
제2017-28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강동구)	139
제2017-28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동구) ...	139

◆ 사업소고시

제2017-3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45
-----------------------------------	-----

◆ 사업소공고

제2017-15호 2017년 유물구입 공고(한성백제박물관) 146

◆ 기 타

제2017-32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 148

제2017-33호 하천점용(일시·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48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16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심의·자문 기구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및 구성

- 심의·자문 기능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거절시 이의신청(조례 제9조)에 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인원 : 9명(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 당연직 : 행정1부시장(위원장), 정보기획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위촉직 : 시의회(1명), 시민사회단체(4명), 개인정보보호 관련학회(2명) 추천

※ 위촉직 위원중 여성 3명, 장애인 1명 포함

- 위원임기 :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1회 연임 가능)

- 존속기한 : 2년(운영성과 평가후 방침으로 기한 연장)

○ 위원회 운영

- 회의시기

- 정기회 : 연 1회
- 임시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의원 1/2 이상 요구, 조례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필요시

- 안전심의

-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전은 서면심의

-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안건 등 위원에게 통보
-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수당 및 여비 지급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회의록은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공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우편번호 04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전화 02-2133-2882, FAX : 02-2133-1074 E-mail : hdw0000@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61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고시 제151호(1975.9.2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83호(2015.12.3)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42호(2016.5.19)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90 일대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사항으로서, 동대문구 전농동 90 일대에 위치한 서울시립대학교 내 직장어린이집 신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학 교	대 학 (서울시립대학교)	동대문구 전농동 90 일대	270,595	-	270,595	서고 제151호 (1975.9.26)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자연경관지구

2)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변경없음]

구역	구분	면적(㎡)	구역	구분	면적(㎡)
일반관리구역	①	43,384	외부활동구역	⑦	9,817
	②	49,239		⑧	10,758
	③	47,831		소계	20,575
	④	42,466	녹지보존구역	⑨	5,887
	⑤	3,720		⑩	4,301
	소계	186,640		⑪	39,846
상징경관구역	⑥	13,346		소계	50,034
	소계	13,346	합계		270,595

(2) 밀도계획(건폐율)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정건폐율 (%)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	비고
			기정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16,826	60.0	23.2	23.3	28	○ 밀도 산정시 제외한 면적 - 비오톱1등급지 : 33,482㎡ ※ 산정기준 면적 계산 270,595㎡-33,482㎡ = 237,113㎡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93,427	3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6,860	60.0				
계	237,113	35.5				

※ 학교용지 면적(270,595㎡) 대비 법정건폐율 31.1%, 사용건폐율 (기정) 20.3% → (변경) 20.4%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높이)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 고
	법정 용적률	사용용적률		계 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 리 용적률		
		기정	변경					
①	177.5	79.6	79.6	104.1	－	114	• 지표로부터 12~50m 이하	
②	150	102.2	103.3	117.4	－	127	• 지표로부터 24~28m 이하	
③	150	97.8	97.8	131.0	－	140	• 지표로부터 24~28m 이하	
④	150	102.1	102.1	128.8	－	138	• 지표로부터 28m 이하	
⑤	150	－	－	134.4	－	140	• 지표로부터 28m 이하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 고
	법정 용적률	사용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⑥	150	16.8	16.8	-	-	19	• 지표로부터 8m 이하 (기존 건축물 개축 및 리모델링 허용)	상징경관구역 (자작마루, 박물관, 경농관)
⑦	165.2	-	-	-	-	3	• 지표로부터 12m 이하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 부대 시설에 한하여 허용)	외부활동구역 (대운동장, 지하주차장)
⑧	150	33.7	33.8	-	-	36	• 지표로부터 22m 이하 (기존 건축물 및 외부공간 부대 시설에 한하여 허용)	외부활동구역 (하늘뿔, 음악관)
⑨	150	0.2	0.2	-	-	0.2	• 기존 건축물 현 범위내 활용	녹지보존구역 (시대동산, 암석표본실)
⑩	150	-	-	-	-	-	-	녹지보존구역 (배봉산자락)
⑪	150	-	-	-	-	-	-	

※ 구역별 높이계획 : 결정도면 참조

(4)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 수 (층)		비고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② 구역	직장 어린이집	-	287.06	-	-	-	520.12	-	-	-	520.12	-	-	-	지상2	신축
⑧ 구역	음악관	1,346.84	1,346.84	-	-	4,808.10	4,815.36 (증 7.26)	-	-	3,629.37	3,636.63 (증 7.26)	-	-	지하1, 지상4	지하1, 지상4	준공 면적 반영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결정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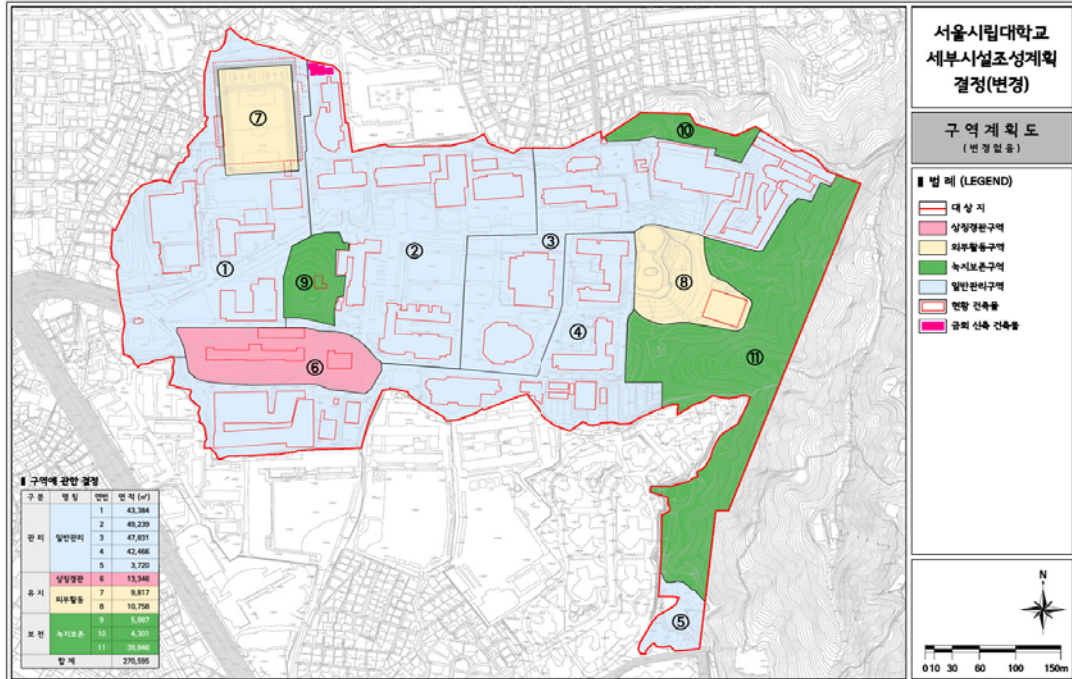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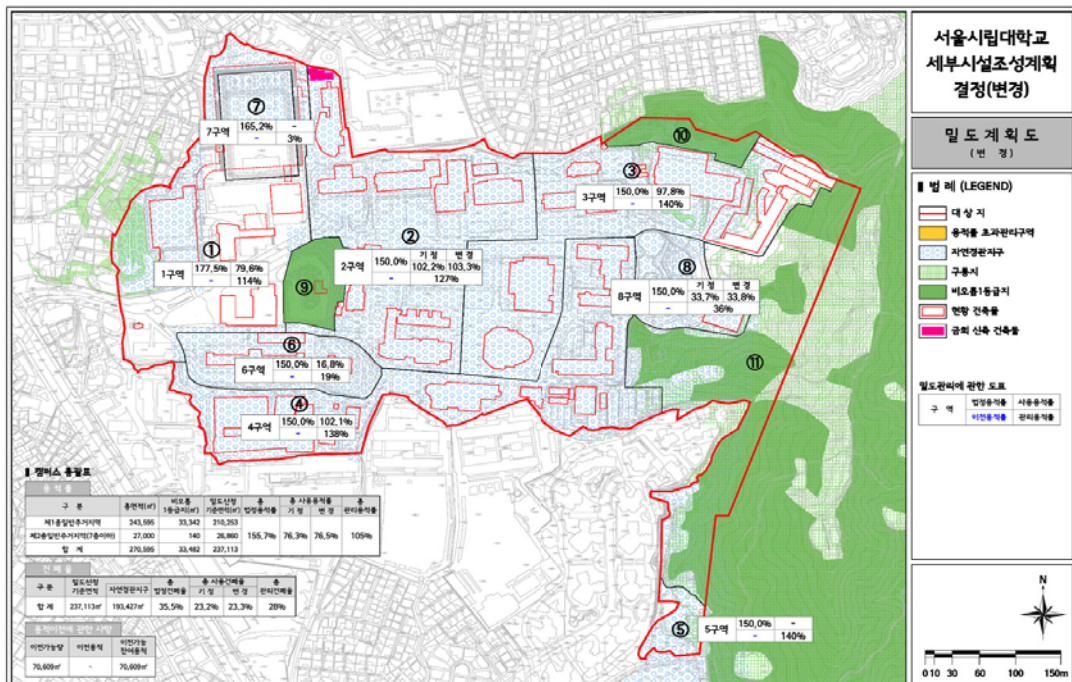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2133-8413) 및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전화 2127-4583)에 관계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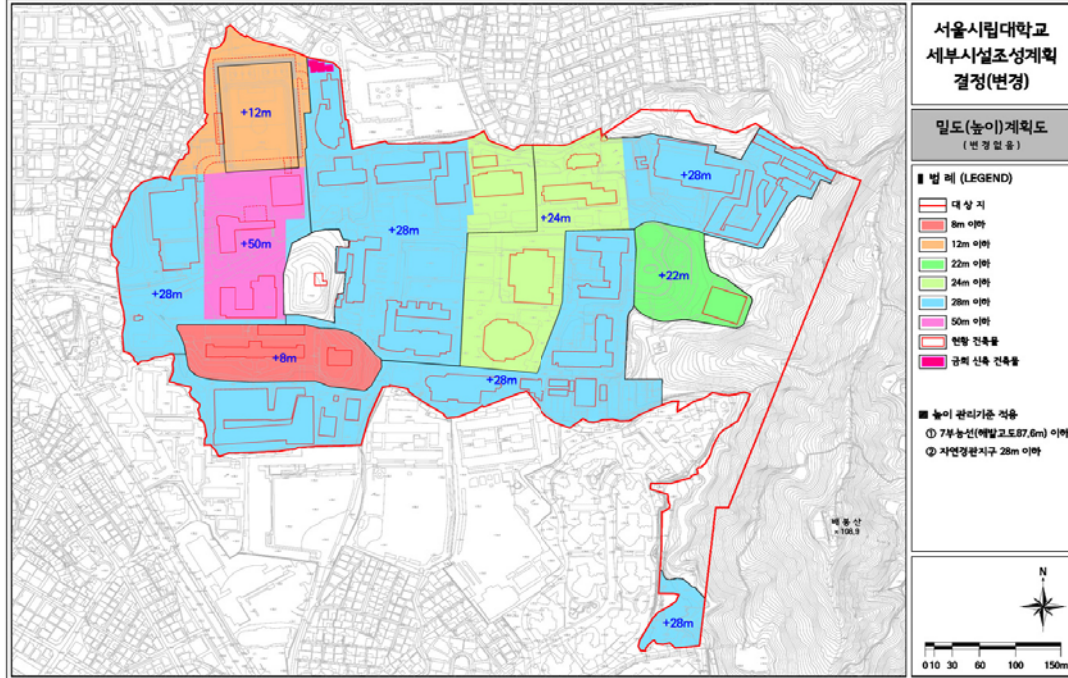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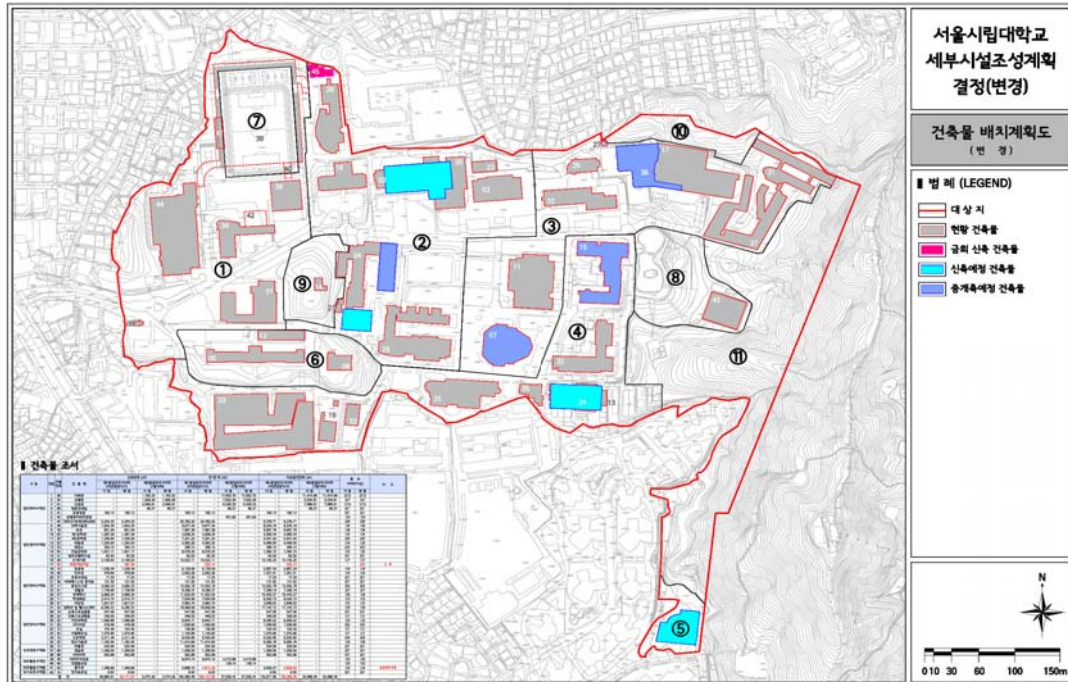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건폐율 · 용적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높이)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63호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름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름1등급 토지(비오름유형 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름평가 1등급인 토지)”의 변경결정 내용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고시취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된 비오름1등급 토지 중 비오름1등급 경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2. 고시내용 : 비오름1등급 토지 변경 결정

연번	지 번	필지면적 (㎡)	비오름1등급지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서초구 우면동 산20-2	16,694	13,871	증) 2,008	15,878	
	서초구 우면동 산20-3	37,480	7,200	증) 21,976	29,177	
2	종로구 평창동 444-8	364	0	증) 128	128	
3	서초구 원지동 산34-1	1,928	5	감) 5	0	

3. 관계도면 : 첨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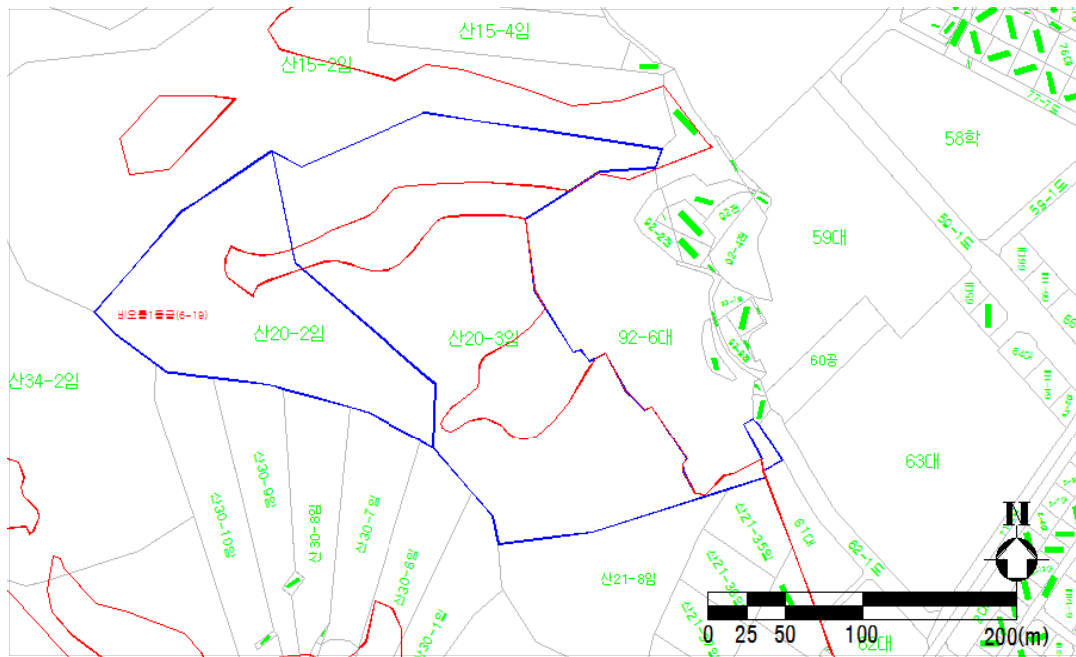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문의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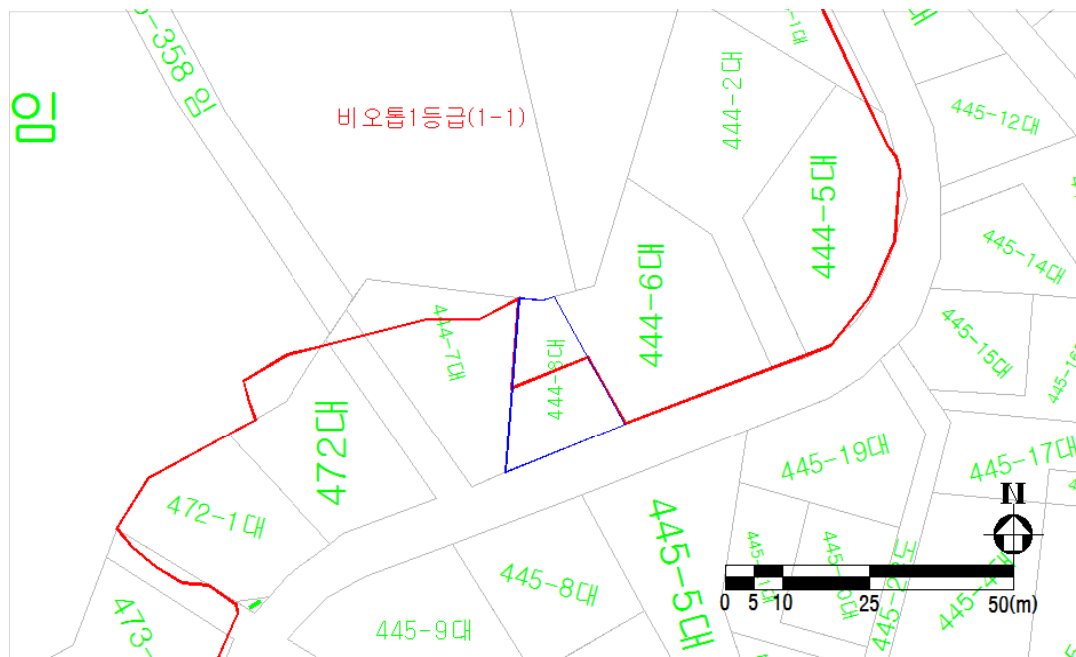
첨부 #1

비옴1등급 토지 경계 변경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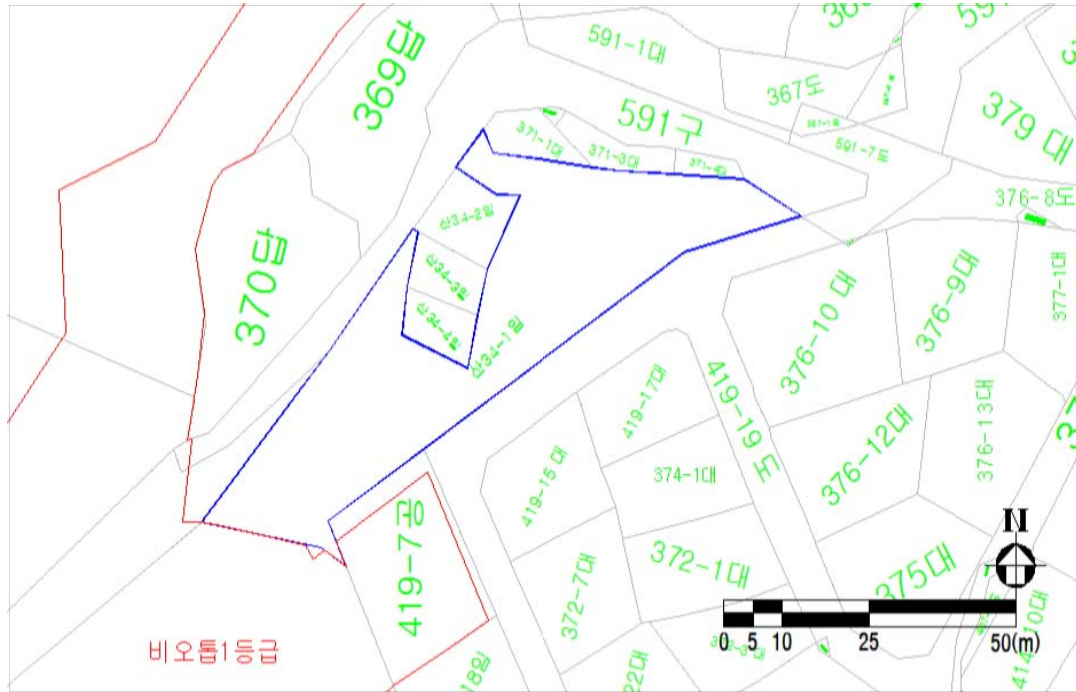
1) 서초구 우면동 산20-2 / 산20-3



2) 종로구 평창동 444-8



3) 서초구 원지동 산34-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6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양주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1-61호(2011.1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3호(2015.02.2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서울시구간-화랑로) 확장 및 지하철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404호(2016.12.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하였기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며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84 일원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서울시구간-화랑로) 확장 및 지하철도 설치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 (변경없음)

○ 폭 38→42m, 연장 323m, 면적 18,21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당 초)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경)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변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15.02.26) ~ 2016. 12. 31 (당 초)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15.02.26) ~ 2017. 12. 31 (변 경)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변경없음, 생략)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031-528-5474) 또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02-2133-80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66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변경 고시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에 따라 도시가스 온압보정 계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온압보정계수 개념

○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는 상태의 온도와 압력에서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0℃, 101,325Pa)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

2. 온압보정계수

가.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나. 보정계수 : 0.9991

3. 적용범위

가.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최고압력이 2,451.7Pa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나. 최고압력이 2,451.7Pa를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서울시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4. 적용방법

○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5. 시행일

○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서울시 고시 제2016-68호(2016.2.25)는 폐지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67호

도시계획시설(공원)명칭 제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신규 조성한 공원에 대하여 부시장 방침 제110325호(행정과, 1995. 3. 20.)에 의거 그 명칭을 제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공원(어린이·소공원)명칭 제정내역

연 번	구 분	위 치	규모(㎡)	제정 공원명칭	비고(기존명칭)
1	어린이공원	종암동 134-3	1,842	별집	종암5-1
2	어린이공원	종암동 134-8	925	일신	종암5-2
3	어린이공원	종암동 135-4	946	옛시장	종암6
4	어린이공원	길음동 1284-14	1,645	늘푸른	길음8-1
5	어린이공원	길음동 1284-1	1,997	아름	길음8-2
6	어린이공원	보문동6가 207일대	1,561	자주바위	보문3
7	소공원	길음동 1285-9	1,244	길음골	길음7-1
8	소공원	길음동 1285-10	383	길췌	길음7-2
9	소공원	길음동 1284-13	1,173	행복한	길음8-1
10	소공원	길음동 1284-6	287	두레	길음8-2
11	소공원	하월곡동 230-1	481	잔월	신월곡2
12	소공원	삼선동3가 116-1	893	돌마루	삼선1
13	소공원	돈암동 643-2	1,069	되너미	돈암5
14	소공원	정릉동 1039	633	꿈빛	정릉10
15	소공원	하월곡동 225-2	3,782	아름드리	월곡3

2.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38) 및 성북구 공원녹지과(☎02-2627-165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68호

도시철도 역명 제정 확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우이-신설선 역명 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철도 우이-신설선 역명 제정(10개역)

구 분	위 치	역 명
L01역	강북구 우이동 16-20 일대	북한산우이
L02역	강북구 우이동 57-28 일대	솔밭공원
L03역	강북구 우이동 72-186 일대	4.19민주묘지
L04역	강북구 수유동 338-46 일대	가오리
L05역	강북구 수유동 472-677 일대	화계
L06역	강북구 미아동 791-4703 일대	삼양
L07역	강북구 미아동 745-142 일대	삼양사거리
L08역	강북구 미아동 1353-20 일대	솔샘
L09역	성북구 정릉동 286-19 일대	북한산보국문
L10역	성북구 정릉동 139-80 일대	정릉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69호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2호(2008.10.23)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6호(2010.12.02)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된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 지정 (변경없음)

- 1) 정비사업의 명칭 :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366번지 일대	30,772.04	-	30,772.04	

2. 정비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0,772.04	－	30,772.04	1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4,208.19	감) 848.35	3,359.84	10.92	
	도 로	2,669.51	감) 1,020.84	1,648.67	5.36	
	공 원	1,538.68	감) 1,031.25	507.43	1.65	소공원
	공공청사	－	증) 1,203.74	1,203.74	3.91	부지내 건축물 기부채납
택 지	소 계	26,563.85	증) 848.35	27,412.2	89.08	
	택 지1	25,360.11	증) 2,052.09	27,412.2	89.08	공동주택(아파트)
	택 지2	1,203.74	감) 1,203.74	－	－	

2) 용도지역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30,772.04	-	30,772.04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30,772.04	-	30,772.04	100	

3) 용도지구 (변경없음)

가) 시설보호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②	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공항로 일대	57,931,000 (30,772.04)	서고 제120호 ('77.4.22)	-

나) 고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김포공항 주변일대	원추표면 (112.86m미만)	12,804,000 (30,772.04)	서고 제120호 (‘77.4.22)	-

4)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

가) 도로 결정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 정	중로	3	1	12~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490 (309)	등촌동 510-13	등촌동 366-157	-	건고시-8호 (1968.1.23)	
변 경	중로	3	1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490 (309)	등촌동 510-13	등촌동 366-157	-	-	
기 정	소로	1	1	8~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75 (175)	등촌동 526-22	등촌동 366-156	-	서울시고시 제2008-372호 (2008.10.23)	
변 경	소로	1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75 (175)	등촌동 526-22	등촌동 366-156	-	-	

주1) ()는 사업대상지내 연장임.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1	중로 3-1	- 노선 폭원축소 - 폭 : 12~15m → 12m - 연장 : 309m	대상지 인접도로와 주변도로(12m)의 일체적 정비를 위하여 인접도로는 주변도로와 동일한 폭원으로 변경
소로 1-1	소로 1-1	- 노선 폭원축소 - 폭 : 8~10m → 8m - 연장 : 175m	인접대지 내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공지활용계획(보도 조성)으로 인하여 폭원 축소

나) 공원 결정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공 원	어린이공원①	등촌동 366-4 일원	1,538.68	감) 1,538.68	-	
변경	공 원	소공원①	등촌동 366-4 일원	-	증) 507.43	507.43	

■ 공원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 원	소공원①	• 공원 세분류 변경 및 면적 변경 - 어린이공원 → 소공원 - 면적 : 1,538.68㎡ ⇒ 507.43㎡	• 대상지 내 적정 기반시설 계획을 위하여 공원 면적 축소 및 세분류 변경

다) 공공청사 결정 조서

결정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공공청사	등촌동 366-61번지 일원	-	증) 1,203.74	1,203.74	부지내 건축물 기부채납 (연면적 2,005㎡)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청사	• 신설 - 면적 : 1,203.74㎡	• 노후된 등촌2동주민센터의 이전 설치를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시설의 종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사무소	66	증) 214	280	
생활편익시설	900	감) 900	-	
근린생활시설	302.67	증) 47.33	350	

시설의 종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90	증) 210	300	
	주민운동시설	700	감) 350	350	
	주민공동시설	650	감) 650	-	
	작은도서관	83	증) 127	210	
	어린이놀이터	838.7	감) 288.7	550	
	어린이집	-	증) 350	350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 정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0,772.04	104	-	-	104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기정	택지1	25,360.11	강서구 등촌동 366-24번지 일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169 이하	185 이하	최고 14층 이하, 평균 10층 이하
	택지2	1,203.74	강서구 등촌동 366-61번지 일원	연립주택	30 이하	89 이하	94 이하	4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공급계획					
			구 분		세 대 수			
					합 계	분양	재건축소형(임대)	
			합 계		400 (100.0%)	374 (100.0%)	26 (100.0%)	
			공동주택	소 계	388 (97.0%)	362 (96.8%)	26 (100.0%)	
				전용 60㎡이하	88 (22.0%)	62 (16.6%)	26 (100.0%)	
				전용 60㎡ ~ 85㎡이하	160 (40.0%)	160 (42.8%)	—	
				전용 85㎡초과	140 (35.0%)	140 (37.4%)	—	
			연립주택	소 계	12 (3.0%)	12 (3.2%)	—	
				전용 60㎡이하	8 (2.0%)	8 (2.1%)	—	
				전용 60㎡ ~ 85㎡이하	4 (1.0%)	4 (1.1%)	—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52.1%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로 3-1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변경	택지1	27,412.20	강서구 등촌동 366-24번지 일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40 이하	182 이하	197 이하	55m이하 (최고 15층 이하, 평균 12층 이하)
	공공청사	1,203.74	강서구 등촌동 366-61번지 일원	공공청사	60 이하	200 이하		30m이하 (7층 이하)
	● 주택 공급계획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세 대 수					
			합 계	분양	재건축소형(임대)			
	합 계		541 (100.0%)	515 (100.0%)	26 (100.0%)			
	공동주택	소 계	541 (100.0%)	515 (100.0%)	26 (100.0%)			
		전용 60㎡이하	236 (43.6%)	210 (40.8%)	26 (100.0%)			
		전용 60㎡ ~ 85㎡이하	305 (56.4%)	305 (59.2%)	-			
		전용 85㎡초과	-	-	-			
● 85㎡이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 계획상 85㎡이하 건설비율 100%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 계획상 85㎡이하 연면적 100%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로 3-1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 소로 1-1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심의완화사항	● 층수완화 : 평균 10층 이하 → 평균 12층 이하							
기타사항	● 공공보행통로 6m							

다)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구분		산 정 내 용		
기정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택지	계획 정비기반시설
		30,772.04㎡	26,563.85㎡	4,208.19㎡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4,208.19㎡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3α) 이내 = 170% × (1 + 1.3 × 0.1584) = 205.00%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 4,208.19㎡ / 26,563.85㎡ = 0.1584		

구분		산 정 내 용					
변경	기준용적률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기준용적률 170% 적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1 (공동주택)	계획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택지 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토지 (도로, 공원, 공공청사)	건축물 (공공청사부지 내 연면적 2,005㎡)		
		30,772.04㎡	27,412.20㎡	3,359.84㎡	1,122.91㎡	-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계획정비기반시설 면적(A+B)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택지 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4,482.75㎡ - 0㎡ - 0㎡ = 4,482.75㎡ ● 순부담 : 최초 용도지역 상향면적(18,779.92㎡) 대비 23.87%					
		토지 (A)	● 3,359.84㎡ (도로, 공원, 공공청사)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B)		● 공공청사부지 내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청사(복합시설)) - 건축연면적 : 2,005㎡ (건폐율 60%, 용적률 200%) ● 환산부지면적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건축연면적 × 표준건축비) / (공시지가 × 2) = (2,005㎡ × 2,352,000원/㎡) / (2,099,793.6원/㎡ × 2) = 1,122.91㎡ ● 표준건축비 :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서울시, 2015) - 동청사(주민자치센터) : 2,000㎡초과 = 2,352,000원/㎡ ● 공시지가 : 2,099.793.6원 ※ 공공시설 환산 부지면적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2014.08)에 따라 환산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α) = 170% × (1 + 1.3 × 0.1705) = 207.68% 이하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482.75㎡ / 26,289.29㎡ = 0.1705 ●정비계획용적률 = 182% 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순부담 면적(인센티브 부여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7)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계획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면적)	공급면적	비고 (연면적)
기정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0,772.04㎡	26세대	59.87㎡ : 26세대	81.79㎡	2,126.54㎡
변경	등촌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0,772.04㎡	26세대	59.98㎡ : 26세대	81.74㎡	2,125.24㎡

■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분		주요내용	비고
기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관계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 - 건축법 등에 따른 상한용적률 : 181% ∴ 적용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181%	●정비계획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165% 이하	
	재건축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소형주택 건설규모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181% - 165%) × 50% = 8% ●소형주택 건설면적 = 대지면적 × 8% = 2,125.11㎡	●소형주택 : 전용 60㎡이하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계획	●소형주택 건설면적 = 세대수 × 공급면적 = 26세대 × 81.79㎡ = 2,126.54 > 2,125.11㎡	●공급면적 : 81.79㎡ ●세대수 : 26세대
	확보방법	●정비계획용적률 초과 건설	
변경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관계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 - 건축법 등에 따른 상한용적률 : 197% ∴ 적용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197%	●정비계획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182% 이하	
	재건축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규모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197% - 182%) × 50% = 7.5% ●소형주택 건설면적 = 대지면적 × 7.5% = 2,055.92㎡	●소형주택 : 전용 60㎡이하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계획	●소형주택 건설면적 = 세대수 × 공급면적 = 26세대 × 81.74㎡ = 2,125.24 > 2,055.92㎡	●공급면적 : 81.74㎡ ●세대수 : 26세대
	확보방법	●정비계획용적률 초과 건설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 • 경사지는 지형훼손 최소화 및 녹지 확보 • 사업지구 내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생태면적률을 계획하고 투수성포장재 사용	
재난방지	• 화재 : 단지내 소방도로 확보 및 소화전 설치,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금지 • 수해 : 사업지구내 조경면적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토양포장을 및 우수유출량 감소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 대상지 남측으로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와 접해있으며, 북측 500m 이내에 등촌초, 등촌중, 백석초, 염창초가 위치하고, 동측 500m 거리에는 양동중이 위치하고 있음	• 향후 사업대상지가 개발될 시 등촌초교, 백석중교, 영일고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통학환경 및 보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주거단지내 보행환경 및 보행안전 확보 계획 수립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 정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기존 : 270세대 • 계획 : 400세대 • 증가 : 130세대	
변 경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지정(변경)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기존 : 270세대 • 계획 : 541세대 • 증가 : 271세대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2016년 제22차)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가결〉

○ 조건사항

- 대상지 북측 도로변 경관 및 가로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커뮤니티시설은 북측 도로변으로 배치 검토
- 향후 건축심의시 북측 도로변 주동의 배면 디자인 적정성 검토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도서 참조

4.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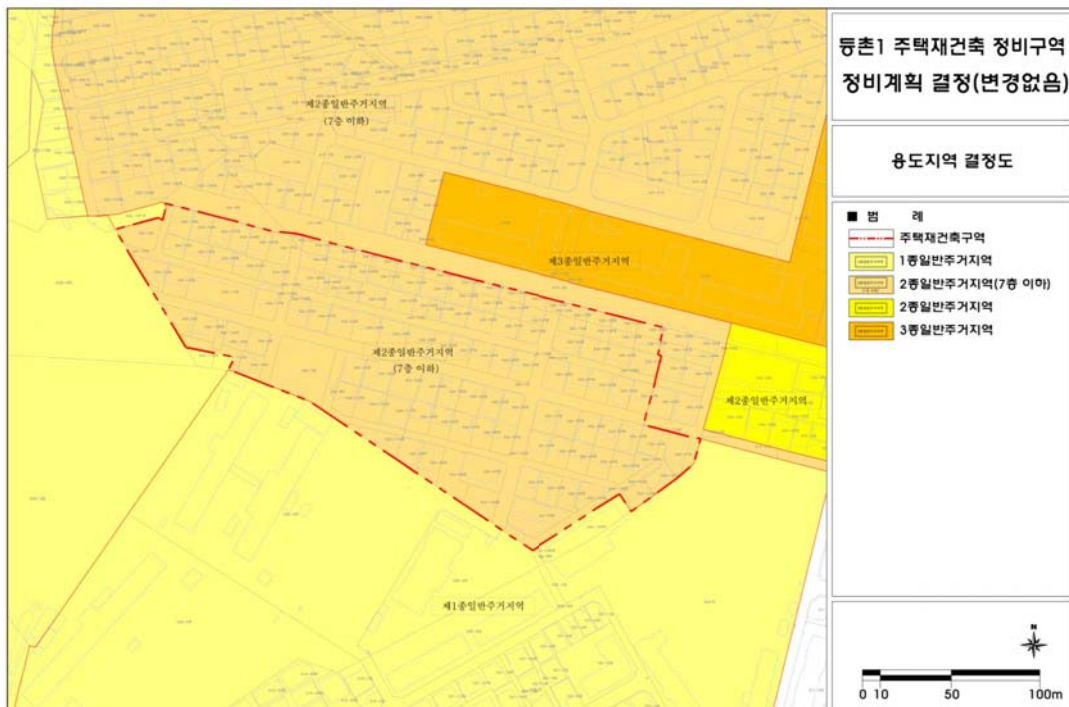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02-2133-7229) 및 강서구청 주택과(☎ 02-2600-6825)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결정도>



<용도지역 결정도>



<기반시설 결정도(기정)>



<기반시설 결정(변경)도>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0호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 변경없음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18	사당동	303	2.1ha	190%	60%	12층 이하	2	단독	• 동측 및 남측 폭 8m 도로확보 • 서측 폭 10m 도로확보 • 통학로 확보(남성중교)

2. 정비구역의 지정

- 1) 정비사업의 명칭 :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규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	증) 20,265	20,265	

3.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0,265	10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471	2.3	
	도 로	471	2.3	
획지1		19,794	97.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20,265	-	20,265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0,265	-	20,265	100	

3)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730	사당동 266-7	사당동 303-99	일반 도로	-	73.4.20 (서고 제54호)	
신설	소로	3	(2)	6	국지 도로	106 (72)	사당동 708-543	사당동 303-159	일반 도로	-	-	

※ 연장()는 구역 내 연장임.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2)	- 신설 - 폭 : 6m - 연장 : 106m (72m)	원활한 통행 등 이면가로 활성화를 위하여 노선 신설

※ 연장()는 구역 내 연장임.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경 로 당	획지1	-	증) 155	155	
	어린이놀이터		-	증) 450	450	
	주민운동시설		-	증) 413.13	413.13	
	문고시설(작은도서관)		-	증) 110	110	
	보육시설(어린이집)		-	증) 200	200	
	관리사무소		-	증) 150	150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265	획지1	19,794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일대	79	-	-	79	-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정 법적상한	
신설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0,265	획지1	19,794	사당동 303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190 이하	190 이하	35m이하 (평균7층이하, 최고10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구 분		세대수		비율(%)			
			계		425		100			
			60㎡이하		349		82.1			
			60~85㎡이하		76		17.9			
			85㎡초과		－		－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425세대)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획지1 내 건축한계선 3m 지정							
기타사항			○ 공공보행통로계획 － 남북간 보행 동선 연결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계획 : 4m － 건축한계선을 통해 확보되는 공지는 공공보행통로 계획 : 3m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1 (공동주택)	계획정비 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 · 공유지	택지 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국 · 공유지
	20,265㎡	19,794㎡	471㎡	4.1㎡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 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 면적(A+B)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내 기존 국 · 공유지 면적 - 택지 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국 · 공유지 면적 = 471㎡ - 4.1㎡ - 0㎡ = 466.9㎡ · 순부담 : 획지면적(획지1 19,794㎡) 대비 2.4%			
개발가능 용적률 산 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α) = 190 × (1 + 1.3 × 0.0236) = 195.8% 이하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66.9㎡ / 19,794㎡ = 0.0236 · 정비계획용적률 = 190% 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순부담 면적(인센티브 부여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법 제4조제1항제6호)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따라 영향 저감방안 강구 ·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녹지 변동은 없으며, 사업시행 시 단지 내 녹화를 통해 최대한의 녹지 공간 확보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경계부의 녹화용벽설치, 우수함류 지점을 최대한 확보하는 계획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동측 남성중학교 입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 추후, 동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 -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8)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주택재건축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가칭)사당5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	현황) 414세대 계획) 425세대 증) 11세대	-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	19,794	-	19,794	
1	-	19,794	사당동 303번지 일대	19,79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0)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해당사항 없음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16년 제20차)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가결>

- 조건사항 : 건축한계선 설정을 통해 확보하는 보도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 검토하고, 향후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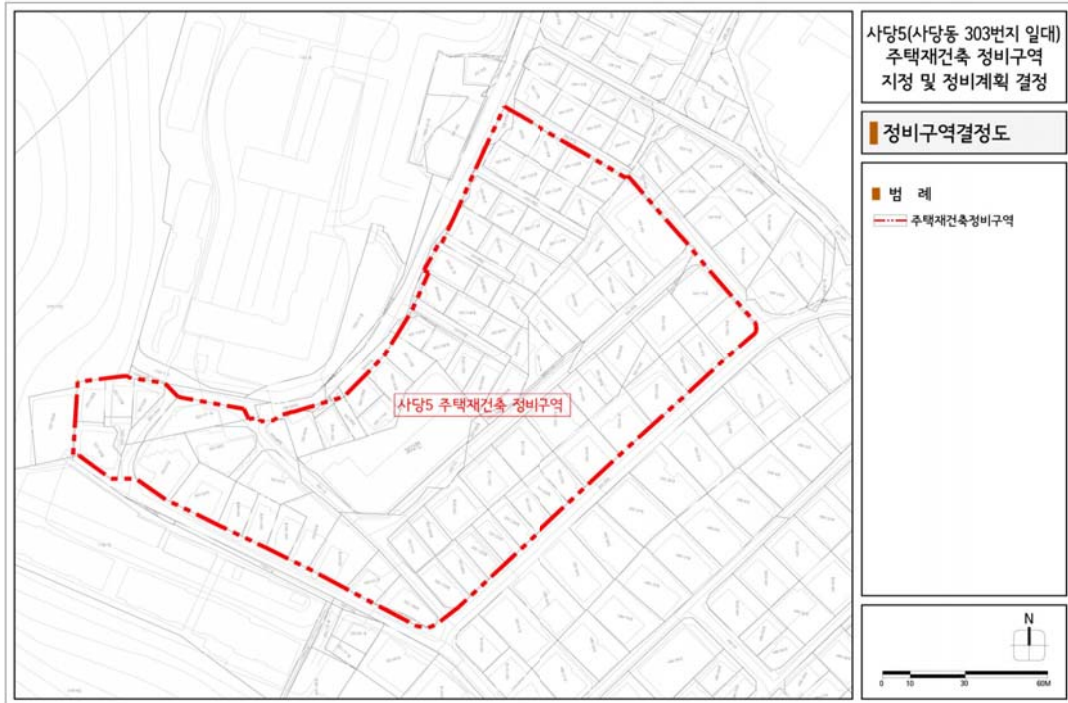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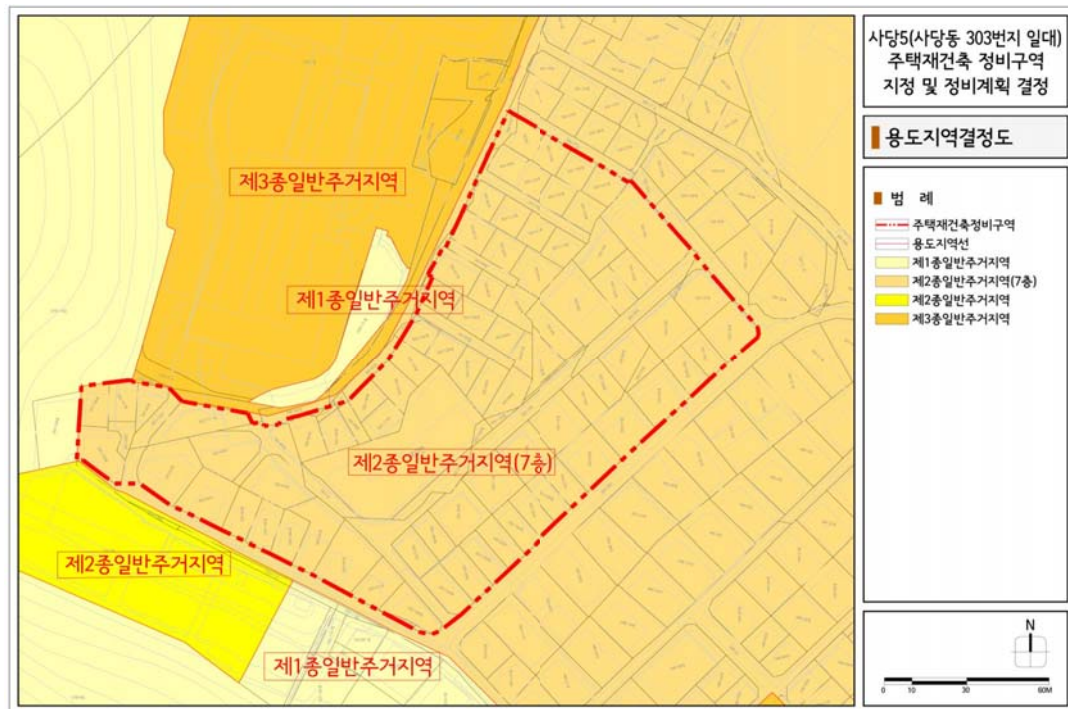
5.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02-2133-7229) 및 동작구청 주택과(☎ 02-820-9625)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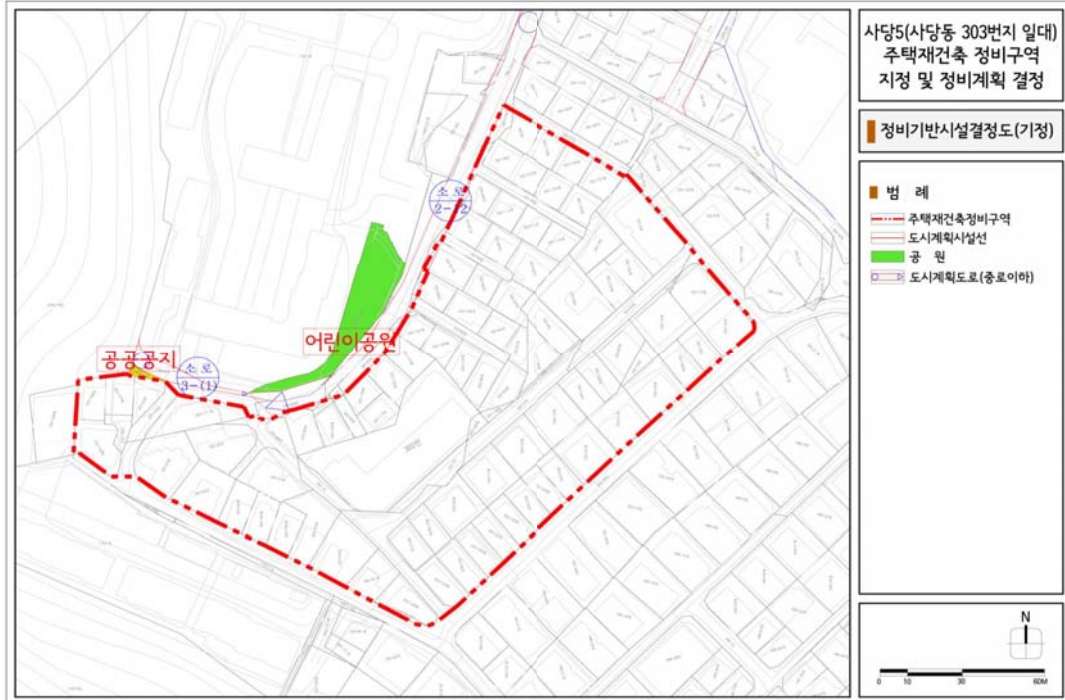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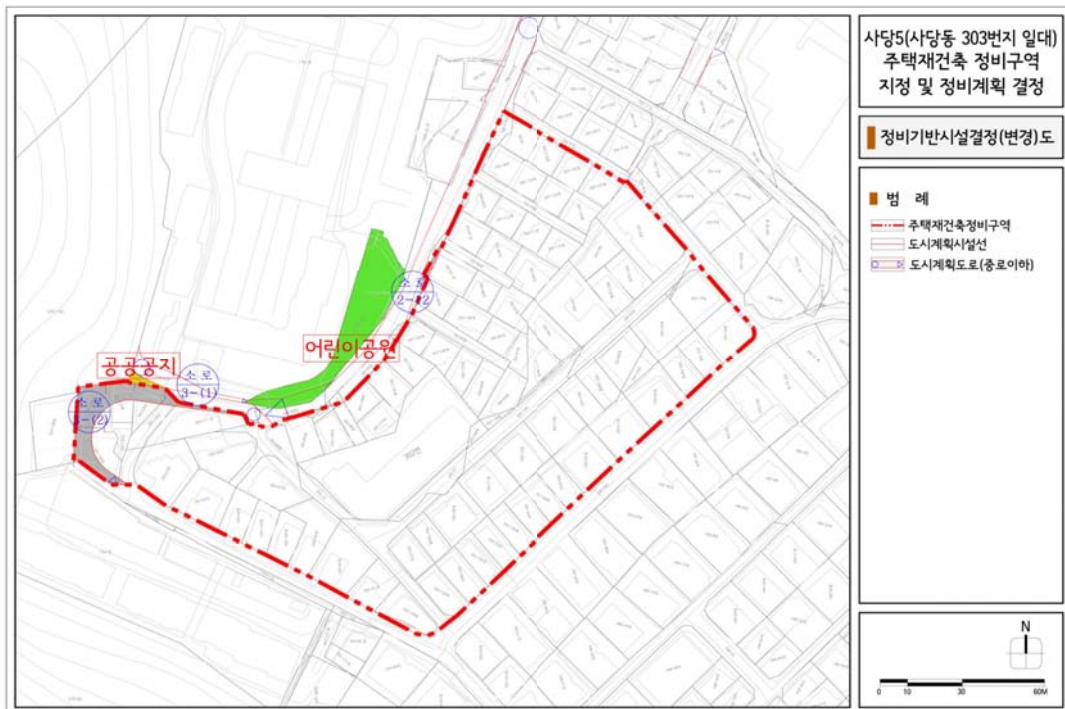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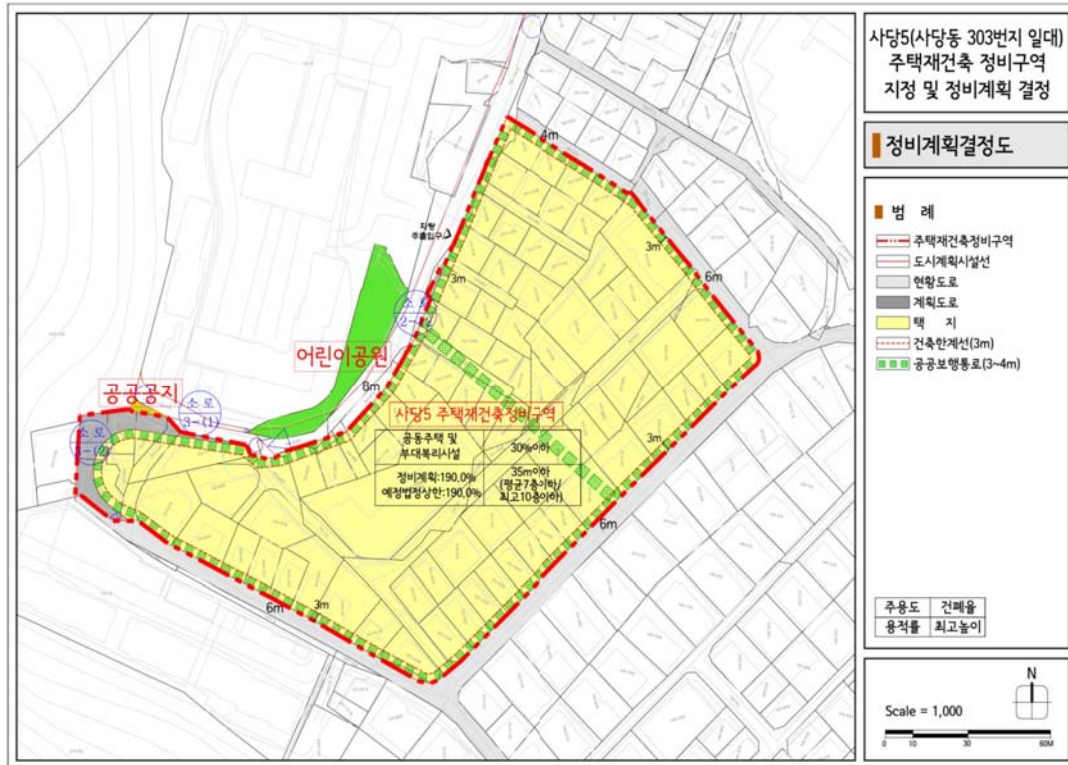
<기반시설 결정도(기정)>



<기반시설 결정(변경)도>



<지형도면고시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1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47호(2008.7.24.)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7호(2009.3.26)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77호(2010.3.4.)로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8호(2015.10.22.) 및 제2016-175호(2016.6.23.)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4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가. 결정(변경) 취지

-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준공 예정일 변경 요청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4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 명 칭 : 한남동 블루스퀘어 증축 및 대수선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m)	층수
문화시설	공연장	용산구 이태원로 294	30,250.17	54.59	72.73	17	지하4, 지상4

마.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인터파크 씨어터 (대표이사 박진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4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사. 사업의 준공예정일

- 당 초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이내
- 변 경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이내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문화시설과, 02-2133-42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2호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

건축법 제43조에 의거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5항에 근거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관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행사범위

가. 행사 성격 :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관측활동에 한함

나. 행사 유형

- 1) 문화행사 : 전시회, 음악회,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
- 2) 관측행사 : 시민장터(벼룩시장), 바자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

다. 사용일수 : 연간 60일 이내

2. 관련절차

가. 신고인 : 공개공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나. 처리절차

- 1) 신고인은 공개공지 사용 전 공개공지 사용신청서 일체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 주관부

서에 신고해야 함

- 2) 해당 자치구는 신고인의 공개공지 사용요건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공개공지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공개공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신청 시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 1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사용신고서를 교부하고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집합건물의 공개공지 사용 동의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
- 3) 접수된 신고 내용이 공개공지 사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공개공지 사용 신고서가 미교부되며, 자치구는 신고인에게 미교부 사실과 사유를 통보해야 함
- 4) 공개공지 사용 완료 시 사용자가 시설물의 훼손여부 등 이상 유무에 대하여 공개공지 소유자의 확인서를 받아 사용을 완료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사용신청 서식 : 붙임 참조

3. 사용 시간 및 일수 산정

가. 1일 사용시간 : 07:00 ~ 22:00

※ 행사내용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자치구 승인을 받아 행사시간은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사용일수 산정

1일 사용시간 내 여러 건의 행사 신청 시, 공개공지 사용 위치와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사용일수는 1일로 산정함

4. 준수사항

가. 시설물 설치

- 1) 시설물은 신고된 장소에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 가능함 (통행로 확보)
- 2) 시설물 설치·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함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3) 공개공지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기존 시설물 파괴 등 훼손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함

나.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함

다. 행사장 관리

- 1) 공개공지 내 맨홀, 환기구 등 안전위해 우려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용일 7일 전까지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고 응급실 및 화장실 설치
- 2) 행사 시 이동상인 단속과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질서와 청결유지

라. 기타 제한사항

- 1) 공개공지 사용신고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됨

- 2) 기타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한사항
5. 행위제한 등
- 가. 아래 나열한 행위는 제한됨
- 1) 상업성 광고 및 행사·정치적 행사·종교적 행사
- ※ 자치구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관측활동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나. 협의가 필요한 행위
- 1) 스피커, 앰프 등 음향기기 사용
 - 2) 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
 - 3) 행사 안전요원 동반 여부
 - 4) 스모그, 폭죽, 불꽃놀이, 풍선날리기, 종이꽃가루 등 안전과 관련된 효과 연출물품 사용 여부
 - 5) 기타 시민안전, 보행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등
6. 적용시기 : 2017. 3. 2. 이후
7. 재검토기한 : 이 기준 고시 이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12.31.까지로 한다
8.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2133 - 7124, 7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서식1] 공개공지 사용 신청서 1부.
 2. [서식2] 공개공지 사용 준수사항 동의서 1부.
 3. [서식3] 행사계획서 1부.
 4. [서식4]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1부.
 5. [서식5] 공개공지 사용신고서 1부.
 6. [서식6] 공개공지 사용 신고대장 1부.

【서식 1】

공개공지 사용 신청서						
대지위치						
건 축 물	대지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연 면 적	m ²
	층 수		주 용 도		공개공지	m ²
건 축 주	성 명				연 락 처	
	주 소					
공개공지 사용 신청 개요						
사용기간	[일] 년 월 일 () 00:00 ~ 년 월 일 () 00:00					
사용규모	사용면적	m ²	사용인원	☐ 100인 미만 ☐ 100~500인 ☐ 500~1,000인 ☐ 1,000인 이상		
사용목적						
행사유형	문화행사	☐ 전시회, ☐ 음악회, ☐ 콘서트, ☐ 기타 ()				
	관측행사	☐ 시민장터(벼룩시장), ☐ 바자회, ☐ 기타 ()				
행사개요	행 사 명					
	행사내용 (요 약)					
	책 임 자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이 메 일		
직 위			생년월일			
자체 체크리스트	[협의가 필요한 행위]			[제한행위]		
	☐ 스피커, 앰프 등 음향기기 사용 여부 ☐ 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 ☐ 행사 안전요원 동반 여부 ☐ 스모그, 불꽃놀이 등 안전과 관련된 연출 여부 ☐ 기타 시민안전 보호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상업성 광고·행사 ☐ 해당있음 ☐ 해당없음 정치적 행사 ☐ 해당있음 ☐ 해당없음 종교적 행사 ☐ 해당있음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에 따라 공개공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소 속 성 명 연락처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개공지 사용 위치를 표기한 도면 2. 공개공지 사용 준수사항 동의서, 행사계획서 및 원상복구계획서 3. 공개공지 사용 승낙서 (사용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1.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중이 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물 설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해당 공개공지에 설치된 조경, 편의시설 등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서식 2】

공개공지 사용 준수사항 동의서

1. 시설물 설치

- 가. 시설물은 신고된 장소에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통행로 확보)
- 나. 시설물 설치·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
 -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다. 공개공지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기존 시설물 파괴 등 훼손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함

2. 소음기준 : ‘소음·진동 관리법’ 에서 규정된 기준 준수

- 가. 주거지역
 - 주간(07:00~18:00) : 65dB이하, 저녁(18:00~22:00) : 60dB이하
 - 아침(05:00~07:00) : 60dB이하, 야간(22:00~05:00) : 60dB이하
- 나. 그 밖의 지역
 - 주간(07:00~18:00) : 70dB이하, 저녁(18:00~22:00) : 65dB이하
 - 아침(05:00~07:00) : 65dB이하, 야간(22:00~05:00) : 60dB이하

3. 행사장 관리

- 가. 공개공지 내 맨홀, 환기구 등 안전위해 우려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용일 7일 전까지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고 응급실 및 화장실 설치
- 나. 폭죽, 불꽃놀이, 풍선 날리기, 종이 꽃가루 등 효과 연출용 물품은 반드시 해당 자치구와 사전 협의 후 사용
- 다. 행사 시 이동상인 단속과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질서와 청결 유지

4. 기타 제한 사항

- 가. 공개공지 사용신고서를 교부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나. 기타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한 사항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 고 자 ○ ○ ○ (인)

【서식 3】

행 사 계 획 서

☐ 행사 개요

- 일 시 : (예시) 2016년 5월 1일(월) 09:00 ~ 5월 31일(금) 18:00
- 장 소 : (예시) 서울시 OO구 OO로 OO 공개공지
- 참석 인원 : (예시) 200명
- 주최·주관 : (예시) OO고등학교
- 책 임 자 : (예시) OO고등학교장 OOO
- 행 사 내 용 : (예시) '서울을 사랑하자' 미술 전시회

☐ 행사 일정 및 세부내용

(예시)

행 사 기 간 (사 용 시 간)	행 사 명	내 용	비 고
5월 1일 (09:00~18:00)	시설물 설치	부스 설치, 전시물 설치	1일
5월 2일 ~ 30일 (09:00~18:00)	본 행 사	작품 전시회	29일
5월 31일 (09:00~18:00)	시설물 철거	부스 및 전시물 철거	1일

☐ 추진 대책

(예시)

- 참가자 안전 대책
- 이동상인 단속 대책
- 행사 후 청소대책
- 설치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대책 등
- 공개공지 주변 주정차 금지 및 대중교통이용 대책 등

【서식 4】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 시설물 설치 내역

시 설 명	규 격(m) (가로×세로×높이)	사 용 용 도	개 수
(예시) 몽골텐트	3×2.5m	홍보부스	100개
(예시) 의 자	-	행사용 의자	400개

※ 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 기재 (동원 장비, 무대, 테이블, 의자, 현수막, 음향시설 등)
 - 현수막 등에 새겨진 문구를 “사용용도”란에 기재, 음향시설 : 스피커 출력용량 반드시 기재

☐ 원상복구 계획 : 시설물 철거, 쓰레기 수거 방법 등

○ 시설물 철거

(예시)

- 용역계약 업체에서 홍보부스 철거
- 참가업체에서 전시물 철거

○ 쓰레기 수거

(예시)

- 용역 계약업체에서 청소하고 참가업체에서 쓰레기 미수거시 해당업체에 비용 청구

○ 기타사항

【서식 5】

공개공지 사용신고서						
신고번호	(예시) 2017-○○구-공개공지-제○호					
대지위치						
건 축 물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
	층 수		주 용 도		공개공지	㎡
건 축 주	성 명				연 락 처	
	주 소					
공개공지 사용 신청 개요						
사용기간	[일] 년 월 일 () 00:00 ~ 년 월 일 () 00:00					
사용규모	사용면적	㎡	사용인원	☐ 100인 미만 ☐ 100~500인 ☐ 500~1,000인 ☐ 1,000인이상		
사용목적						
행사유형	문화행사	☐ 전시회, ☐ 음악회, ☐ 콘서트, ☐ 기타 ()				
	관측행사	☐ 시민장터(벼룩시장), ☐ 바자회, ☐ 기타 ()				
행사개요	행 사 명					
	행사내용 (요 약)					
	책 임 자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이 메 일		
	직 위		생년월일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개공지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6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에 따라 공개공지 사용신고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인						
유의사항	1.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상기 내용과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중이 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물 설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해당 공개공지에 설치된 조경, 편의시설 등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됩니다.					

【서식 6】

OO구 공개공지 사용 신고대장

신고 번호	신고자	건 축 물 개 요					공 개 공 지 사 용 신 청 내 용					
		대지 위치	건물명	주용도	건축주 (연락처)	공개 공지 (㎡)	사용 면적 (㎡)	사용기간 (사용시간)	사용 일수	행사 유형	신고자 (연락처)	책임자 (연락처)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8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결정취지

당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에서 지하연결통로 부분이 추가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주차장	송파구 신천동 28번지 일대	19,937	증 31	19,968	2013.4.11 (서울시고시 제2013-93호)	- 중복결정(19,414㎡) • 송파나루근린공원(1,186㎡),시장(48㎡) • 광로1-29, 대로3-106 내 [18,228㎡중 철도중복결정(2,297㎡)] - 입체적결정(523㎡→572.8㎡) • 신천동28(신규, 18.8㎡) • 신천동29(475㎡→506㎡) • 잠실동40-1(시장 48㎡) • 높이:-0.76~16.01m(해수면기준)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입체적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결정내용				최초 결정일	비 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길이(m)	40.36~48.18	-	40.36~48.18	2013.4.11 (서울시고시 제2013-93호)	-
				폭(m)	7.6	-	7.6		
				높이(m)	2.51~14.52	-	2.51 ~ 14.52		
	②	주차장	송파구 잠실동 40번지 1호	길이(m)	27.50	-	27.50	2013.4.11 (서울시고시 제2013-93호)	-
				폭(m)	1.75	-	1.75		
				높이(m)	-0.76~16.01	-	-0.76~16.01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결정내용				최초 결정일	비 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주차장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길이(m)	42.10~54.13	—	42.10~54.13	2015.4.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2호)	—
				폭(m)	3.1	—	3.1		
				높이(m)	3.16~14.26	—	3.16~14.26		
	④	주차장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길이(m)	—	6.80~7.05	6.80~7.05	—	—
				폭(m)	—	7.28	7.28		
				높이(m)	—	3.88~12.87	3.88~12.87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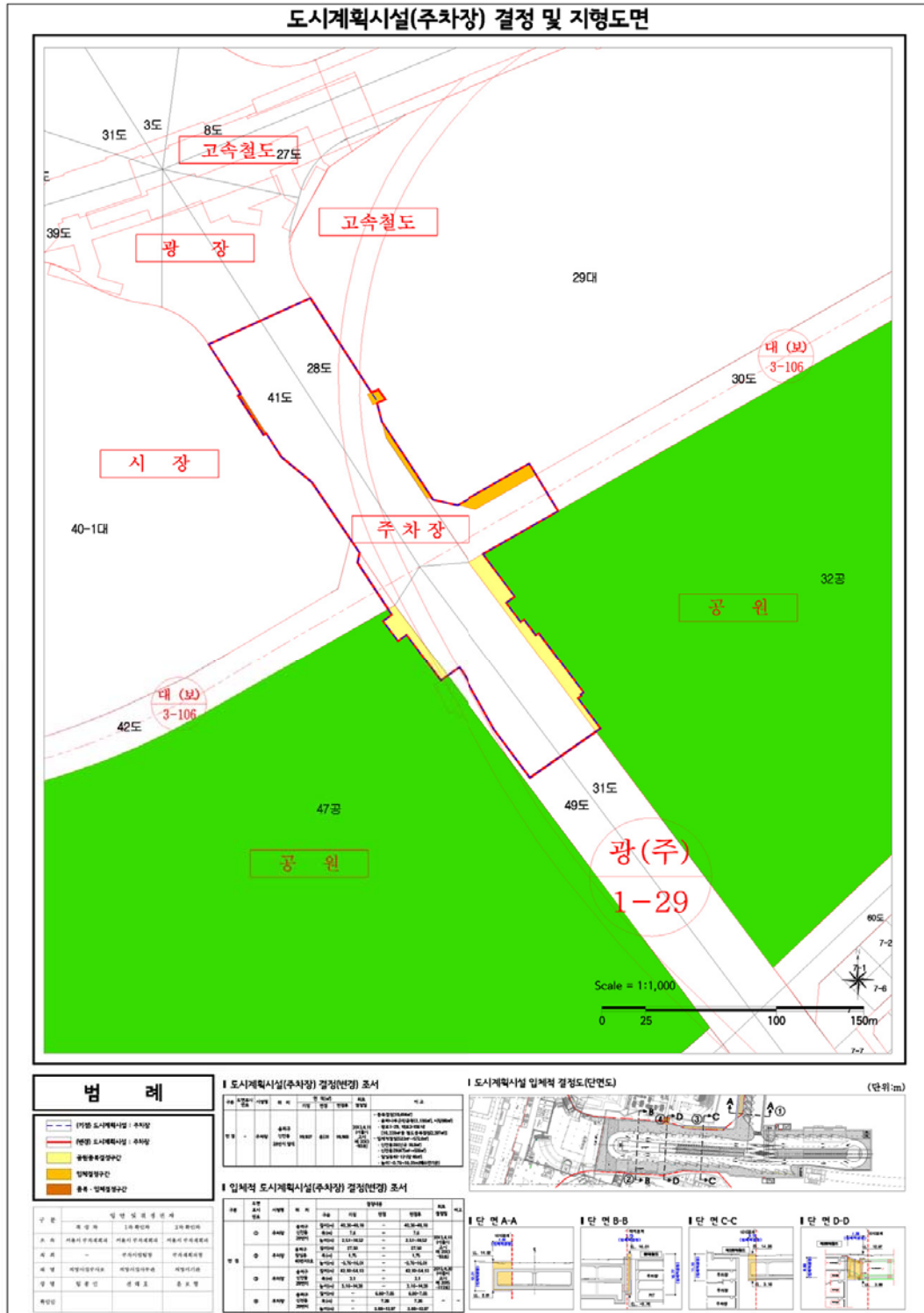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2133-236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4호
**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65호(1996.03.26.)로 지구단위계획(종전 상세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6호(2010.07.15.)로 결정(변경)된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변경) 취지

-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포동 12번지 대청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위하여 획지계획을 변경하고, 특별계획구역1-1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일원	239,685.5	-	239,685.5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65호 (1996.03.26.)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번호	지번	면적(㎡)	
기정	BL1	149,685.8	1	개포동 12	121,040.40	특별계획구역
변경	BL1	149,685.8	1-1	개포동 12	28,517.73	특별계획구역1-1
			1-2	개포동 12	53,259.24	특별계획구역1-2
			1-3	개포동 12	39,263.43	특별계획구역1-3

■ **획지계획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기정 : 획지1 → 변경 : 획지1-1, 획지1-2, 획지1-3	단지별 개발계획(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수립을 위하여 획지 분할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개포동 12번지	121,040.40	감) 121,040.4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6호 (2010.07.15.)	
변경	특별계획구역 1-1	개포동 12번지	-	증) 28,517.73	28,517.73		대청아파트
	특별계획구역 1-2	개포동 12번지	-	증) 53,259.24	53,259.24		대치2단지
	특별계획구역 1-3	개포동 12번지	-	증) 39,263.43	39,263.43		대치1단지(SH)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특별계획구역1-1	개포동 12번지	28,517.73	• 단지별 개발계획(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및 세부개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분할
특별계획구역1-2	개포동 12번지	53,259.24	
특별계획구역1-3	개포동 12번지	39,263.43	

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

구분	기정	변경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1	특별계획구역1-2	특별계획구역1-3
위치	• 개포동 12번지	좌 동		
특별계획구역면적	• 121,040.40㎡	• 28,517.73㎡	• 53,259.24㎡	• 39,263.43㎡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좌 동		

구분			기정	변경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1	특별계획구역1-2	특별계획구역1-3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좌 동		
	건폐율		• 50% 이하	좌 동		
	용적률1)	기준	• 210% 이하	좌 동		
		허용	• 230% 이하	좌 동		
		상한	• 250% 이하	좌 동		
	최고높이		• 1.5D 이하	좌 동		
배치			• 건축선 후퇴 - 개포동길변: 3m, 대치길변: 2m	• 건축한계선 지정 - 대치길변: 2m	• 건축한계선 지정 - 대치길변: 2m	• 건축한계선 지정 - 개포동길변: 3m, 대치길변: 2m
대지내 통로			• 공공보행통로 - 현황 대치1단지와 대치2 단지 사이 폭 6m	• 보차혼용통로 - 특별계획구역1-1 와 특별계획구역 1-2 사이 현황도 로 보차혼용통로 (폭: 7.5m) 조성 • 공공보행통로 - 특별계획구역1-1 와 획지3 사이 공공보행통로 (폭: 3m) 조성	• 보차혼용통로 - 특별계획구역1-1 와 특별계획구역 1-2 사이 현황도 로 보차혼용통로 (폭: 7.5m) 조성	• 보차혼용통로 - 특별계획구역1-2 와 특별계획구역 1-3 사이 현황도 로 보차혼용통로 (폭: 15m) 조성
개발 계획	신축, 재개발 재건축 시		• 사업방식에 따른 관련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 라 세부개발계획을 수립 하여 개발	좌 동		
	리모델링		• 주택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거전용면 적의 10분의 3이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따라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로 정한 용적률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용 적률을 정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2조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 범위에서 서울특 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6) 2-3-5에 의거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 적률 체계와 별도로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규정을 적용하되, 개별 사업단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절차 이행		

주1) 신축, 재개발, 재건축시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6)”을 따르고, 주택법 제2조 제25호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체계와 별도로 관련 규정에 따른 사업규모별 용적률을 적용. (관련법 개정 등 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 준수)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Ⅲ.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사항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개포동 12번지	121,040.40	감) 121,040.4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6호 (2010.07.15.)	
변경	특별계획구역1-1	개포동 12번지	-	증) 28,517.73	28,517.73		대청아파트
	특별계획구역1-2	개포동 12번지	-	증) 53,259.24	53,259.24		대치2단지
	특별계획구역1-3	개포동 12번지	-	증) 39,263.43	39,263.43		대치1단지(SH)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특별계획구역1-1	개포동 12번지	28,517.73	단지별 개발계획(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분할
특별계획구역1-2	개포동 12번지	53,259.24	
특별계획구역1-3	개포동 12번지	39,263.43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28,517.73	-	28,517.73	10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69	20	국지 도로	511	개포동 14	개포동 14-5	일반 도로	수서경찰서	서고시 제534호 (89.12.16.)	
기정	중로	2	364	15	국지 도로	260	개포동 13	개포동 13-1	일반 도로	대전초교	서고시 제534호 (89.12.16.)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지			비고
			번호	지번	면적(㎡)	
기정	BL1	149,685.8	1	개포동 12	121,040.40	특별계획구역
변경	BL1	149,685.8	1-1	개포동 12	28,517.73	특별계획구역1-1
			1-2	개포동 12	53,259.24	특별계획구역1-2
			1-3	개포동 12	39,263.43	특별계획구역1-3

■ 획지계획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기정 : 획지1 → 변경 : 획지1-1, 획지1-2, 획지1-3	단지별 개발계획(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수립을 위하여 획지 분할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획지침	리모델링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지정용도	• 공동주택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획지침	리모델링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건폐율	• 50% 이하	• 3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210% 이하	• 300% 이하	리모델링 완화
	허용용적률 • 230% 이하		
	상한용적률 • 250% 이하		
최고높이	• 1.5D 이하	• 18층 이하	3개층 증축

다.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계획지침	리모델링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배치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지정 - 대치길변 : 2m	좌 등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계획 제어기준 및 계획지침	리모델링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제어기준)	• 도로에 접한 획지는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를 조성 -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조성 - 공지에 주차를 불가능하도록 볼라드 및 수목 설치	• 대치길변 2m 건축한계선 후퇴 후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대지내 통로	보차혼용통로	-	• 특별계획구역1-1와 특별계획구역1-2 사이 현황도로 보차혼용통로(폭 : 7.5m) 조성	
	공공보행통로	• 현황 대치1단지와 대치2단지 사이 폭 6m	• 특별계획구역1-1와 획지3 사이 공공보행통로 (폭: 3m) 조성	

(2) 교통처리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구단위계획 제어기준	리모델링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자전거도로 (제어기준)		• GS자이단지~석담프라자 - 자전거전용(폭 1.5~3m)	• GS자이단지~특별계획구역1-2 경계 - 자전거전용도로 폭 1.5m	

[4]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위치			● 개포동 12번지	좌 동
특별계획구역면적			● 121,040.40㎡	● 28,517.73㎡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좌 동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에 관한계획	용도	지정 용도	● 공동주택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50% 이하	● 30% 이하
	용적률1)	기준	● 210% 이하	● 300% 이하
		허용	● 230% 이하	
		상한	● 250% 이하	
	최고높이		● 1.5D 이하	● 18층 이하
배치			● 건축한계선 지정 － 대치길변 : 2m	좌 동
대지내공지 (제어기준)			● 도로에 접한 획지는 보도형 및 차도형 전면공지 조성 －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조성 － 공지에 주차를 불가능하도록 볼라드 및 수목 설치	● 대치길변2m 건축한계선 후퇴 후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대지내 도로	현황 대치1단지과 대치2단지 사이 폭 6m	- 보차혼용도로 - 특별계획구역1-1와 특별계획구역1-2사이 현황도로 보차혼용도로(폭 7.5m) 조성 - 공공보행도로 - 특별계획구역1-1와 획지3 사이 공공보행도로 (폭 3m) 조성
교통처리 계획	GS자이단지~석탑프라자 - 자전거전용(폭 1.5~3m)	GS자이단지~특별계획구역1-2 경계 - 자전거전용도로 폭 1.5m
개발계획	주택법시행령 제4조2의 규정에 따라 주거 전용면적의 10분의 3이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용적률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정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2조 제25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주거전용면적 85㎡ 미만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40% 이내, D세대수15%이내, 최대 3개층이하 증축) 범위에서 산정된 용적률 규모 적용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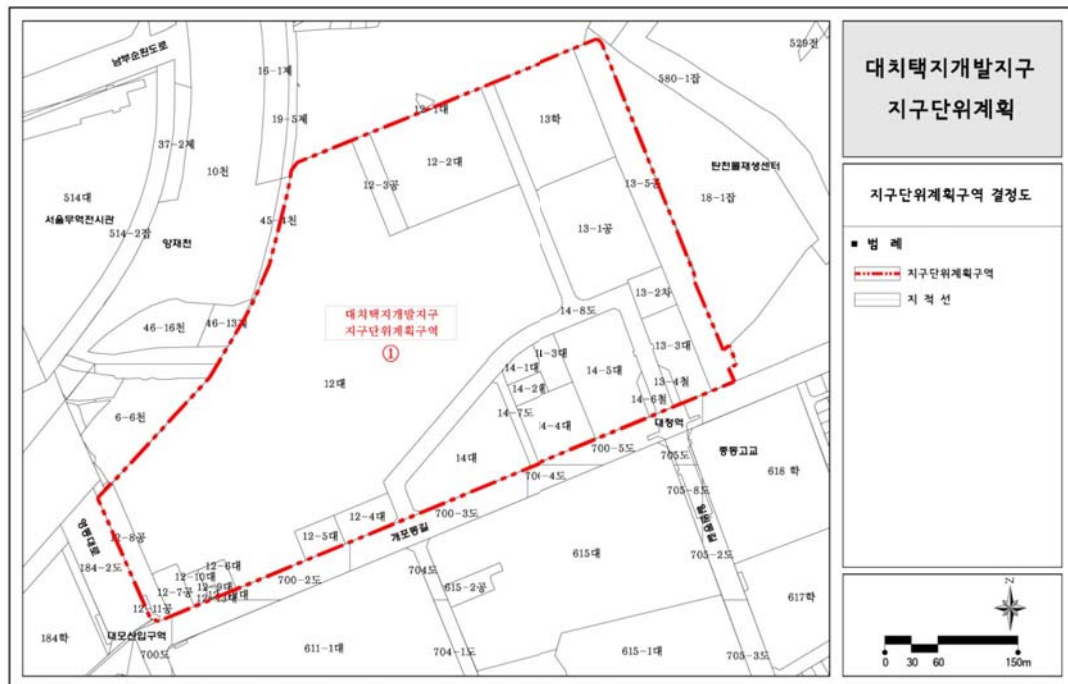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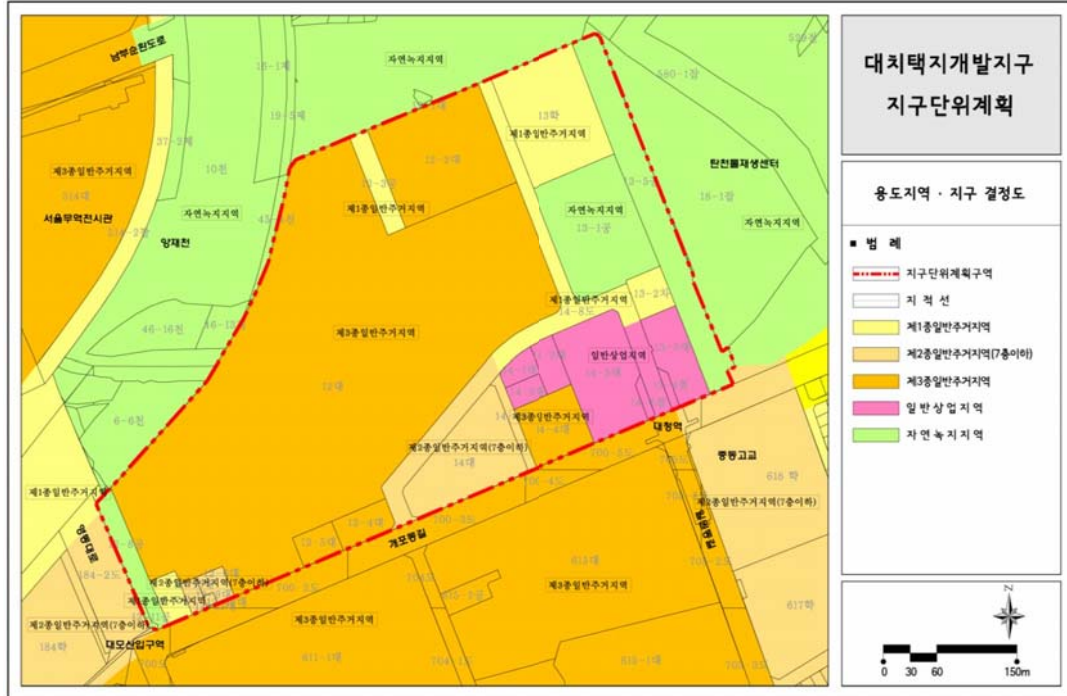
VI.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2133-8386) 및 강남구 주택과(☎3423-6074)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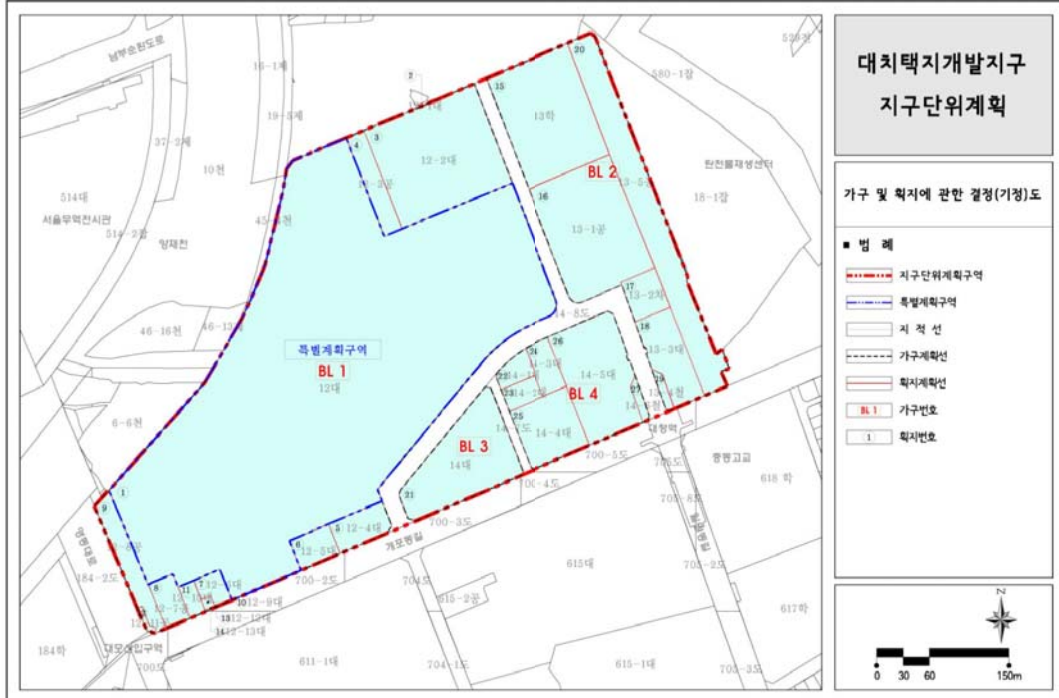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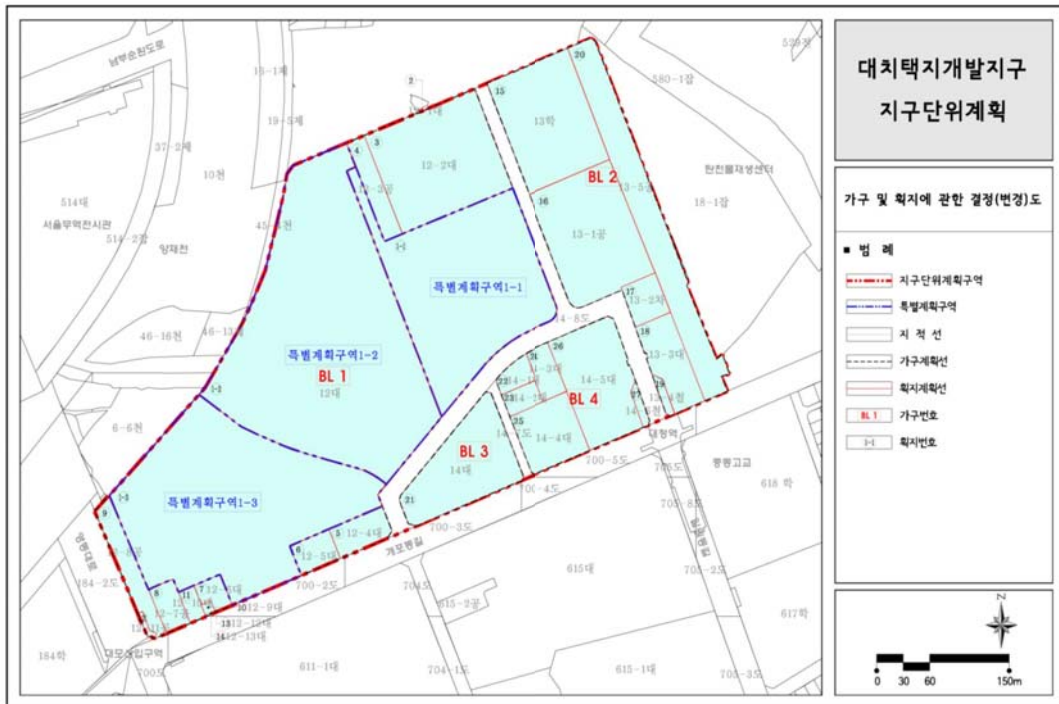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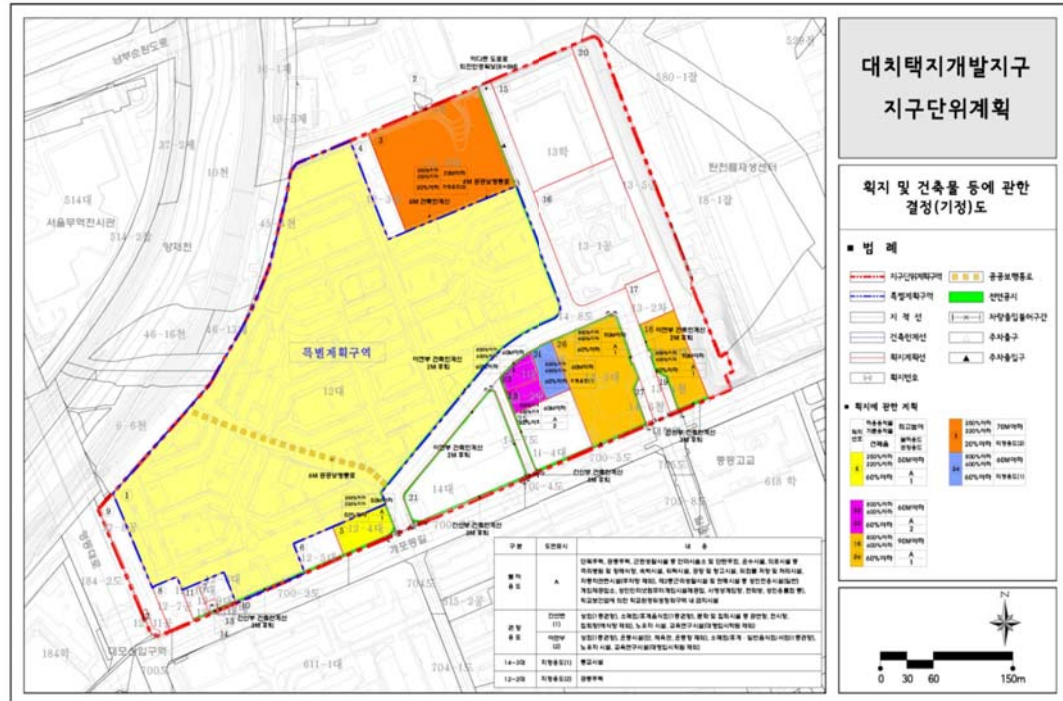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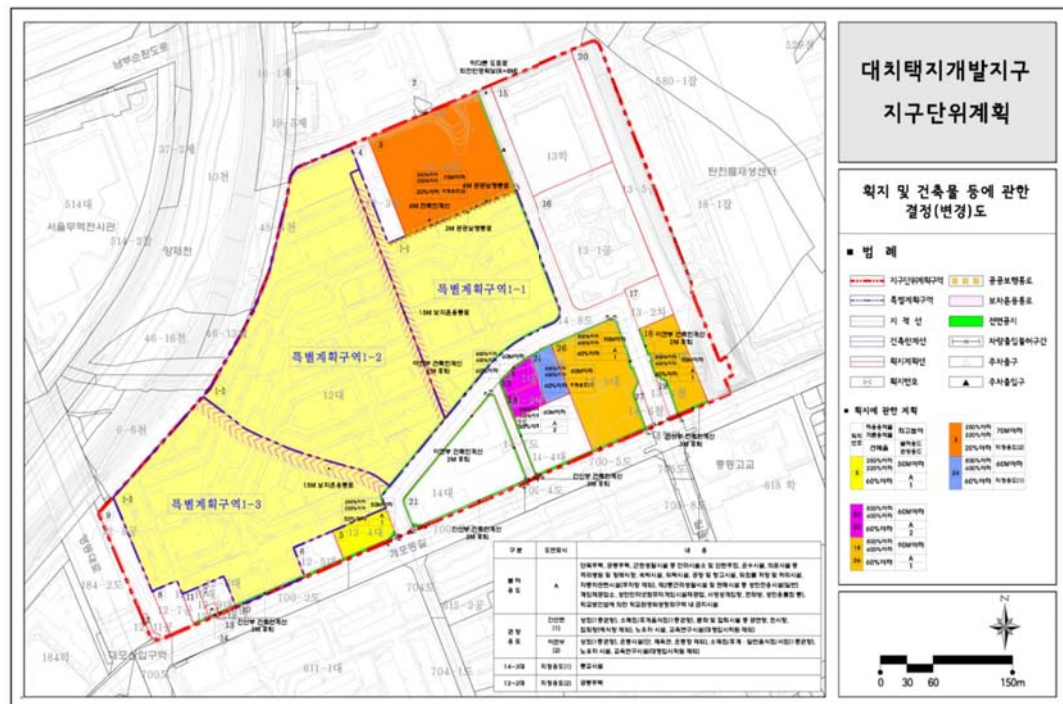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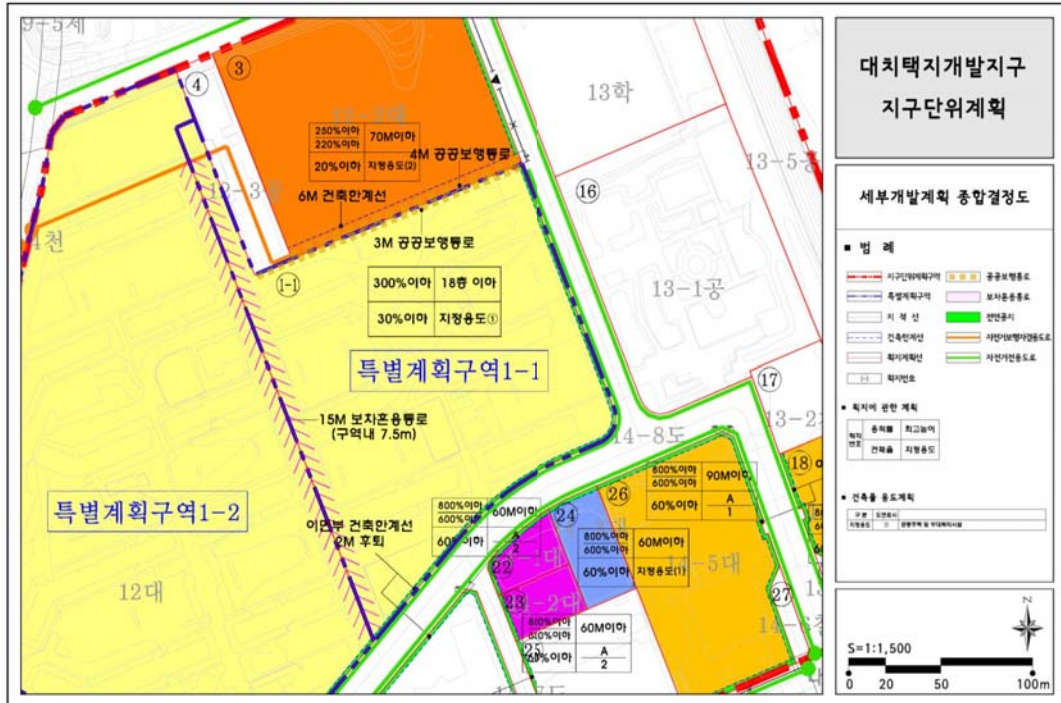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5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19호(2004.12.27)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02호(2012.4.1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32호(2012. 12.13)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58호(2013.10.31.)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부칙 제5조 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1.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칭 : 서울특별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나.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서초동 일대

다. 면적 : 1,528,426.5㎡

계	1주구	2주구	3주구	비고
1,528,426.5㎡	217,992.8㎡	388,886.8㎡	921,546.9㎡	면적변경 없음

2. 주요 변경내용(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신반포22차아파트)

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 공원(400㎡)을 잠원로4길변으로 위치 변경하여 면적(481.60㎡)증가(81.60㎡)
- 녹지(444.8㎡)중 일부를 공원으로 편입하여 면적(363.20㎡)감소(81.60㎡)

3. 반포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아파트지구 면적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반포 아파트지구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1,528,426.5	-	1,528,426.5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분		기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1,528,426.50	100.0	1,528,426.50	100.0	변경 없음
주거용지	소계	942,131.16	61.6	942,131.16	61.6	-
	주택용지	942,131.16	61.6	942,131.16	61.6	변경 없음
중심시설 용지	소계	94,798.60	6.2	94,798.60	6.2	-
	지구중심	37,698.50	2.5	37,698.50	2.5	변경 없음
	주구중심	22,912.10	1.5	22,912.10	1.5	변경 없음
	분구중심	34,188.00	2.2	34,188.00	2.2	변경 없음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481,295.14	31.5	481,295.14	31.5	-
	도로용지	224,617.34	14.7	224,617.34	14.7	변경 없음
	공원용지	56,568.50	3.7	56,650.1	3.7	공원 위치변경, 면적증가(증:81.6㎡)
	녹 지	59,138.00	3.9	59,056.4	3.9	녹지면적감소(감:81.6㎡)
	광 장	972.90	0.1	972.90	0.1	변경 없음
	학교용지	131,617.60	8.6	131,617.60	8.6	변경 없음
	공공청사	8,380.80	0.5	8,380.80	0.5	변경 없음
기 타	소 계	10,201.60	0.7	10,201.60	0.7	-
	종교용지	10,201.60	0.7	10,201.60	0.7	변경 없음

-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반포 아파트지구 (3주구)	■ 토지이용계획 변경 • 공원 위치 변경 및 면적증가(증 : 81.6㎡) • 녹지면적 변경(감 : 81.60㎡)	• 반포 아파트지구(고밀) 정비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면적 및 위치변경 : 공원위치를 잠원로4길변으로 변경

다. 주구별 토지이용계획

- 1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 2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 3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		921,546.9	100.0	921,546.9	100.0	변경 없음
주거용지	소 계	579,786.36	62.9	579,786.36	62.9	-
	주택용지	579,786.36	62.9	579,786.36	62.9	변경 없음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중심시설 용 지	소 계	35,060.70	3.8	35,060.70	3.8	-
	지구중심	-	-	-	-	변경 없음
	주구중심	8,243.10	0.9	8,243.10	0.9	변경 없음
	분구중심	26,817.60	2.9	26,817.60	2.9	변경 없음
도시계획 시설용지	소 계	302,807.84	32.8	302,807.84	32.8	-
	도로용지	154,153.14	16.7	154,153.14	16.7	변경 없음
	공원용지	32,945.70	3.6	33,027.3	3.6	공원 위치변경, 면적증가(증:81.6㎡)
	녹 지	43,921.60	4.8	43,840.0	4.8	녹지면적감소(감:81.6㎡)
	광 장	972.90	0.1	972.90	0.1	변경 없음
	학교용지	64,196.80	7.0	64,196.80	7.0	변경 없음
	공공청사	6,617.70	0.7	6,617.70	0.7	변경 없음
기 타	소 계	3,892.00	0.4	3,892.00	0.4	-
	종교용지	3,892.00	0.4	3,892.00	0.4	변경 없음

- 결정(변경)사유서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반포 아파트지구 (3주구)	■ 토지이용계획 변경 ● 공원 위치 변경 및 면적증가(증 : 81.6㎡) ● 녹지면적 변경(감 : 81.60㎡)	● 반포 아파트지구(고밀) 정비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면적 및 위치변경 : 공원위치를 잠원로4길변으로 변경

라. 용도지역(변경) 조서(변경 없음)

마.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바. 공원·녹지계획(변경)

주구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총 계				56,568.5	56,650.1	변경
1	파랑새	어린이공원	반포동 4-2	4,188.3	4,188.3	변경 없음
	1-1	소공원	반포동 1-1	1,500.0	1,500.0	변경 없음
	1-2	소공원	반포동 1-8	2,439.1	2,439.1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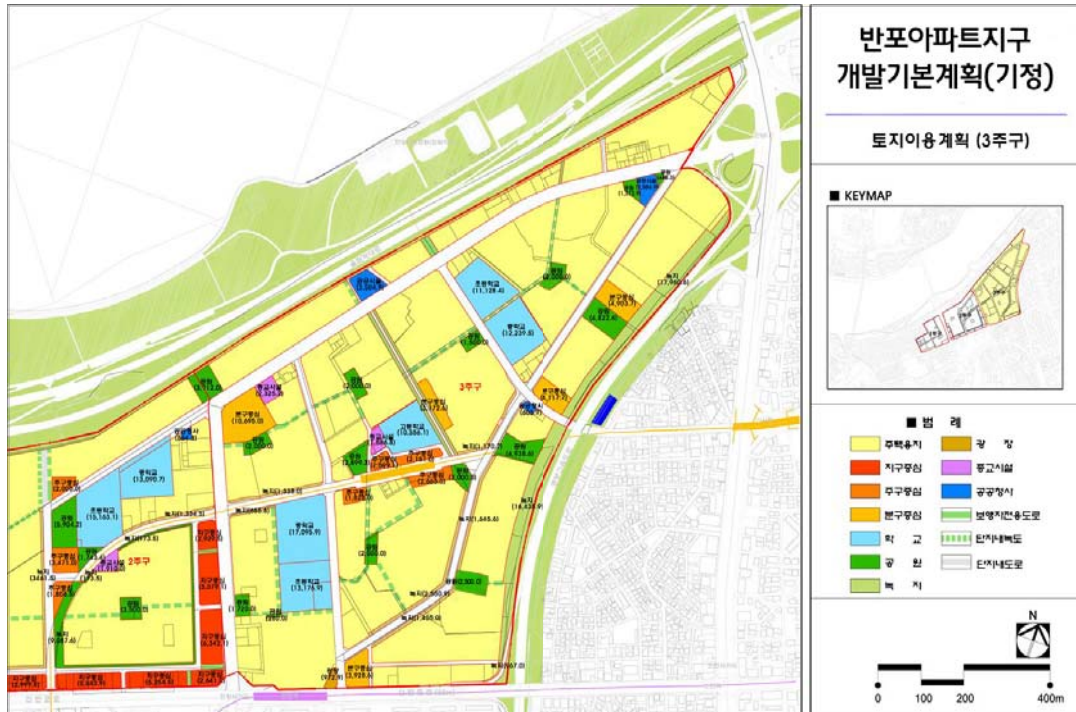
주구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2	반원	어린이공원	잠원동 72-1	5,904.2	5,904.2	변경 없음
	코아	어린이공원	잠원동 72-4	1,743.4	1,743.4	변경 없음
	새터	어린이공원	잠원동 70-6	-	-	-
	늘푸른	어린이공원	잠원동 70-7	2,500.0	2,500.0	변경 없음
	아름	어린이공원	잠원동 70-8	-	-	-
	2-1	소공원	잠원동 73	2,000.0	2,000.0	변경 없음
	2-2	소공원	잠원동 74-2	2,000.0	2,000.0	변경 없음
3	신동	근린공원	잠원동 58-14	4,938.6	4,938.6	변경 없음
	잠원	근린공원	잠원동 62-5	2,899.3	2,899.3	변경 없음
	색동	어린이공원	잠원동 66-11	-	-	-
	점말	어린이공원	잠원동 66-12	-	-	-
	명주	근린공원	잠원동 50-4	4,822.4	4,822.4	변경 없음
	신잠실	근린공원	잠원동 51-3	1,721.2	1,721.2	변경 없음
	3-1	소공원	잠원동 52-1	2,000.0	2,000.0	변경 없음
	3-2	소공원	잠원동 57	1,500.0	1,500.0	변경 없음
	3-3	소공원	잠원동 58-22	2,500.0	2,500.0	변경 없음
	3-4	소공원	잠원동 60-3	2,000.0	2,000.0	변경 없음
	3-5	소공원	잠원동 60-3	2,000.0	2,000.0	변경 없음
	3-6	소공원	잠원동 61-1	2,000.0	2,000.0	변경 없음
	3-7	소공원	잠원동 64-8	3,912.0	3,912.0	변경 없음
	3-8	소공원	잠원동 65-32	2,000.0	1,600.0	변경
	3-9	소공원	잠원동 175	280.0	280.0	변경 없음
	3-10	소공원	잠원동 66	1,720.0	1,720.0	변경 없음
	3-11	소공원	잠원동 65-33	-	481.6	신 설

- 결정(변경)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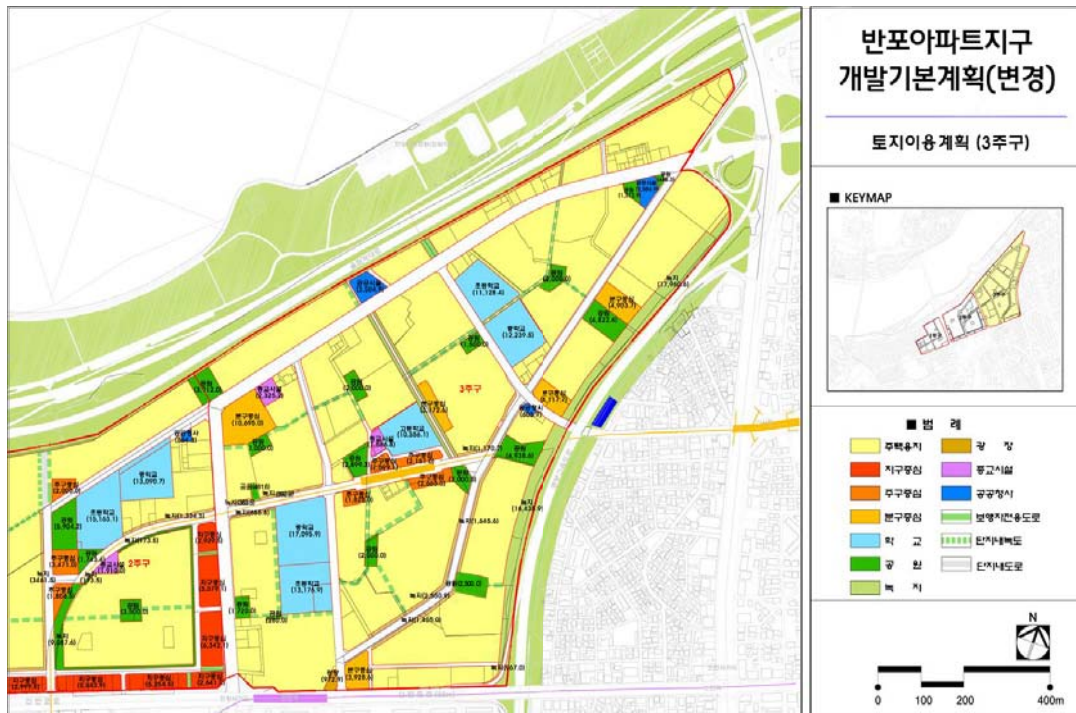
구역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반포 아파트지구 (3주구)	■ 토지이용계획 변경 ● 공원 위치 및 면적 변경(증 : 81.6㎡)	● 반포 아파트지구(고밀) 정비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원 위치 및 면적 변경 : 신반포22차 내 공원을 잠원로4길변으로 위치이동

- 사. 공공시설 확보계획 (변경 없음)
아. 건축물 규제계획 (변경 없음)
자. 중심시설 및 기타건축물 계획 (변경 없음)
차. 경관계획 (변경 없음)
카. 기존건축물 처리계획 (변경 없음)
타. 사업시행계획 (변경 없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도서에 따름
(비치도서)
5. 관계도면 : 붙임참조
#1.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지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련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7) 및 서초구 주거개선과(☎02-2155-734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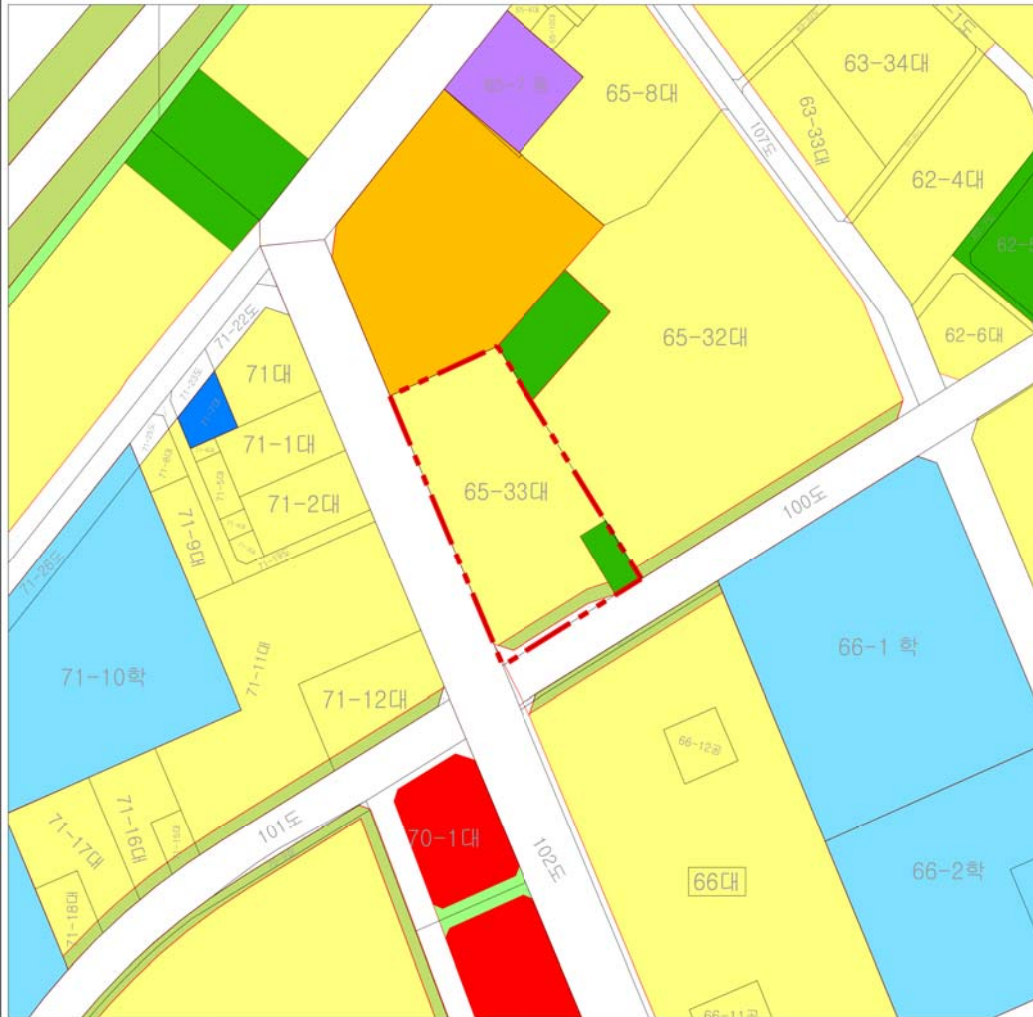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기정)>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변경)>



신반포22차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3주구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 (변경)



- | | |
|------------|---------|
| ■ 범 | 레 |
| --- 정비계획구역 | 녹 지 |
| 주택용지 | 종교시설 |
| 지구정심 | 관광청사 |
| 분구정심 | 보행자전용도로 |
| 학 교 | |
| 공 원 | |

KEYMAP



S = 1 : 20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7호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189호(2015.12.10.)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창동·상계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2016년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2017년 1월 국토교통부 국가지원사항 확정을 거쳐 2017년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개요

- 가. 지역의 명칭 :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나. 지역의 개요

지 역 명	유 형	위 치	면적(㎡)	비고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경제기반형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동·5동 및 노원구 상계2동, 6·7동, 10동 일원	982,839㎡	

다. 사업기간(마중물사업) : 2016년 ~ 2021년

2.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내용

- 가. 계획의 명칭 :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나. 계획의 비전 및 목표
- 1) 비 전 : 수도권 동북부 320만의 일자리·문화 중심 『창동·상계 新경제중심지』
 - 2) 목 표
 - 경제적 활력창출
 - 지식형첨단산업, 문화산업 등 특화산업기반 구축, 일자리창출
 - 문화·생활인프라 확충
 - 대규모 공연시설 아레나 유치로 문화예술기반 구축
 - 물리적 환경개선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KTX연장 등 광역 및 지역인프라 구축으로 교통체계 개선

3.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가. 도시재생사업 및 재원조달계획

1) 마중물사업

사 업 명		주관부서	사 업 비 (억원)			
단위사업	세부단위사업		계	시비	국비	민간
창업/재취업 지원사업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	국토부/서울시	219.36	109.68	109.68	-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	문화예술공방 조성	국토부/서울시	30	15	15	-
	문화예술테마거리 조성	국토부/서울시	20	10	10	-
교통체계 개선사업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1단계)	국토부/서울시	120	60	60	-
	창동·상계 동서간 연계 보행교량 건설(1단계)	국토부/서울시	13.64	6.82	6.82	-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마들로11길, 상계로변 가로환경개선	국토부/서울시	37	18.5	18.5	-
사업비 예산 총계			440	220	220	-

2) 부처협력사업

사 업 명		주관부서	사 업 비 (억원)			
단위사업	세부단위사업		계	시비	국비	민간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	KTX연장· GTX신설	국토부/서울시	-	-	-	-
사업비 예산 총계			-	-	-	-

※ KTX연장·GTX신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 등 수립 후 사업비 등 반영예정

3) 지자체사업

사 업 명		주관부서	사 업 비 (억원)				
단위사업	세부단위사업		계	시비	국비	공기업	민간
거버넌스 구축·운영사업	거버넌스 구축·지원 (도시재생협력 지원센터 설치·운영)	동북권사업단	18.5	18.5	-	-	-
시설 이전사업	창동운동장 체육시설 이전	동북권사업단	328.95	328.95	-	-	-
	광역푸드뱅크 이전	희망복지 지원과	20.79	20.79	-	-	-
	차량기지 내 송전탑 지중화	동북권사업단/ 한국전력	240	240	-	-	-
붐업 등 지역 활성화 사업	플랫폼 창동61 (붐업사업)건립	동북권사업단/ SH공사	80	-	-	80	-
	기성상업지 활성화	동북권 사업단	40	40	-	-	-
창업/재취업 지원사업	동북권 50+캠퍼스 건립	인생이모작 지원과	155.53	155.53	-	-	-
특화산업 집적지 조성사업	차량기지 및 면허시험장 부지 도시개발	동북권사업단/ SH공사· LH공사 등	9,656	-	-	9,656	-
창업/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문화시설 건립 (사진미술관등)	박물관과/ 경제정책과	636.04	636.04	-	-	-
복합 문화시설 조성사업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조성 *()는 민간투자사업임	동북권사업단	27.94 (4,800)	27.94	-	-	- (4,800)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	창동·상계 연결도로 기본계획(기본구상) 수립 용역	동북권사업단	2	2	-	-	-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2단계)	동북권사업단	480	480	-	-	-
지역교통체계 개선사업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2개소)	동북권사업단	335.42	335.42	-	-	-
	창동·상계 동서간 연계 보행교량 건설(2단계)	동북권사업단	41.36	41.36	-	-	-
사업비 예산 총계			12,062.53 (4,800)	2,326.53	-	9,736	- (4,800)

4) 도시재생 민간참여사업(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 등)

사 업 명		주관부서	사 업 비 (억원)				
단위사업	세부단위사업		계	시비	국비	민간	주택 도시 기금
창업/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창업/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서울시/ SH공사	2,256 (374.6)	-	-	1,670.8 (SH포함)	585.2 (374.6)
상업업무중심 개발사업	복합유통센터 개발	서울시/ 농협/민간	3,000	-	-	3,000	-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	복합환승센터 개발	서울시/민간	4,000	-	-	4,000	-
사업비 예산 총계			9,256 (374.6)	-	-	8,670.8	585.2 (374.6)

나. 파급효과

1)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및 세수증대 효과

- 음악·공연·콘텐츠 300개, 지식형 첨단산업 500개 추산
- 창업지원센터 등 임대(산업)공간 250개소 이상 확보로 신규 사업체 1,000개 창업
- 창업, 아레나 및 연관 문화산업 등의 일자리 확보
- 일자리 약 80,000개 창출효과(직접고용 약 42,000개+간접고용 약 38,000개)

○ 지역활성화 및 생활만족도 제고

- 남북간 연결, 중랑천 양안의 보행 및 녹지 연결
- 연결도로, 수변공원, 녹지, 광장 등의 신규 확충으로 단절된 도시공간의 통합·연계
- 열악한 기초인프라 및 도시경관의 개선, 다양한 광역중심 기능도입으로 지역의 자부심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및 삶의 질 개선

2) 광역생활권 파급효과

○ 수도권으로 경제적 활력파급을 통해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 가치를 실현

- 창동·상계 지역을 광역생활권의 중심지로 육성
- 일자리 창출로 장거리 통근량 감소
- 주변지역 후속 도시재생 촉진 효과 기대

4. 예산집행계획(마중물사업)

(단위 : 억원)

합 계	단 계 별 재 원 투 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40	10.1	63.76	199.7	63.14	74.8	28.5

※ 예산집행계획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6.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 없음

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8,692.9	-	68,692.9	100.0	
주거지역	소 계	61,620.2	증7,072.7	68,692.9	-	
	제1종일반주거지역	61,620.2	감61,620.2	-	-	
	준주거지역	-	증68,692.9	68,692.9	100.0	복합문화시설 (50,149.3㎡)
상업지역	소 계	7,072.7	감7,072.7	-	-	
	일반상업지역	7,072.7	감7,072.7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용적률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도봉구 창동 1-23외 5필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8,692.9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민간참여사업을 통한 아래나시설 및 지역활성화용도 도입기반 마련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문화 시설	-	창동 1-23 일대	11,488.2	증38,661.1	50,149.3	서고220호 (‘11.8.4)	
신설	②	문화 시설	-	창동 1-7호	-	증5,970.7	5,970.7	-	

- 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문화시설	- 변경 : 면적 증가 (증38,661.1㎡) - 면적 : 11,488.2㎡ → 50,149.3㎡	아레나 등 복합문화시설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1-24번지를 포함하여 문화시설 확대 지정
②	문화시설	- 변경 : 신설 (증5,970.7㎡) - 면적 : 0㎡ → 5,970.7㎡	사진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 도입을 위해 문화시설 신설

(나)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체육 시설	-	창동 1-24외 3필지	50,231	감38,661.1	11,569.9	서고460호 (’93.1.8)	

- 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체육시설	- 변경 : 면적 감소 (감38,661.1㎡) - 면적 : 50,231㎡ → 11,569.9㎡	아레나 등 복합문화시설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체육시설 면적 변경

(2)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시장

■ 시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②	시장	-	창동 1-23 일대	-	증50,149.3	50,149.3	-	문화시설과 중복 결정

- 시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시장	- 변경 : 신설 (증50,149.3㎡) - 면적 : 0㎡ → 50,149.3㎡	아레나 등 복합문화시설 건립시 판매시설 등 부대사업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장을 문화시설과 중복결정

(나)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사회복지시설	-	창동 1-7호	5,970.7	감5,970.7	-	서고460호 (’92.12.31)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 변경 : 폐지 (감5,970.7㎡) - 면적 : 5,970.7㎡ → 0㎡	푸드뱅크 이전으로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문화 시설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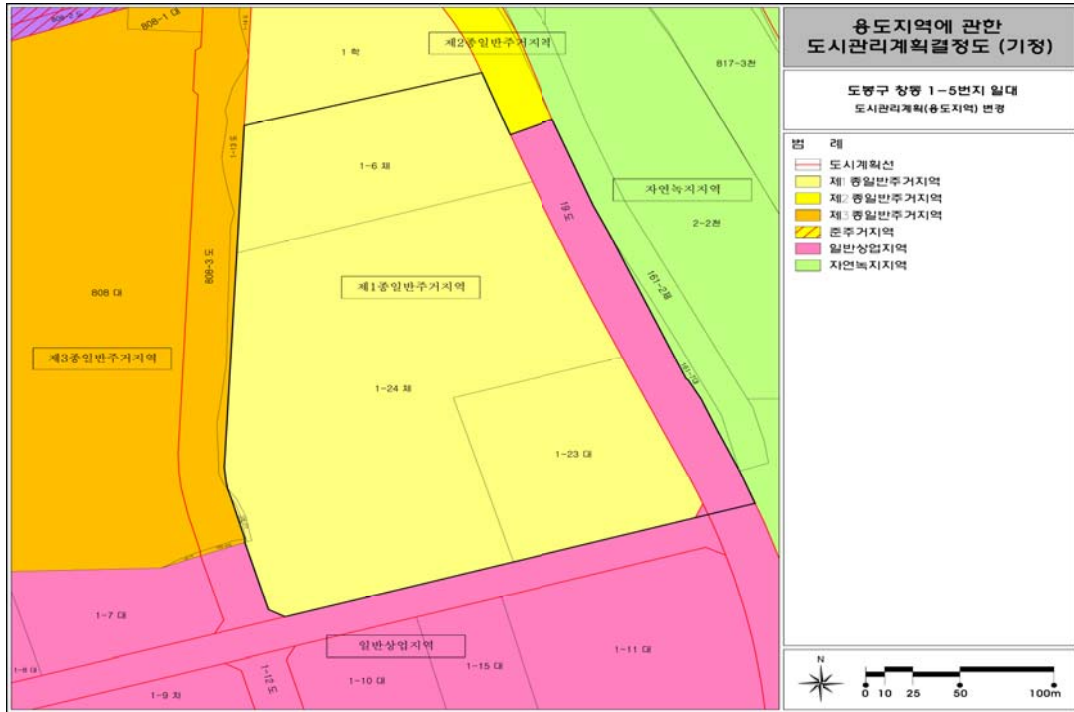
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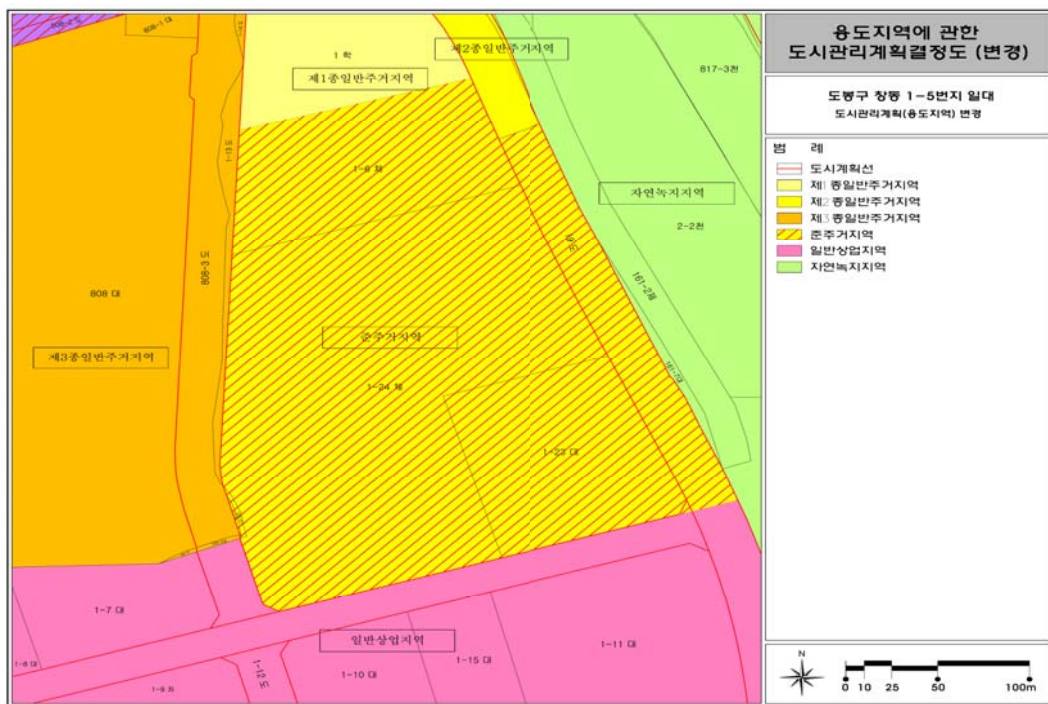
8. 관련서류 열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단(☎02-2133-8284)/ 도봉구 도시계획과(☎02-2091-3555)/ 노원구 기획예산과(☎02-2116-3979), 도시계획과(☎02-2116-3866) 및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02-907-930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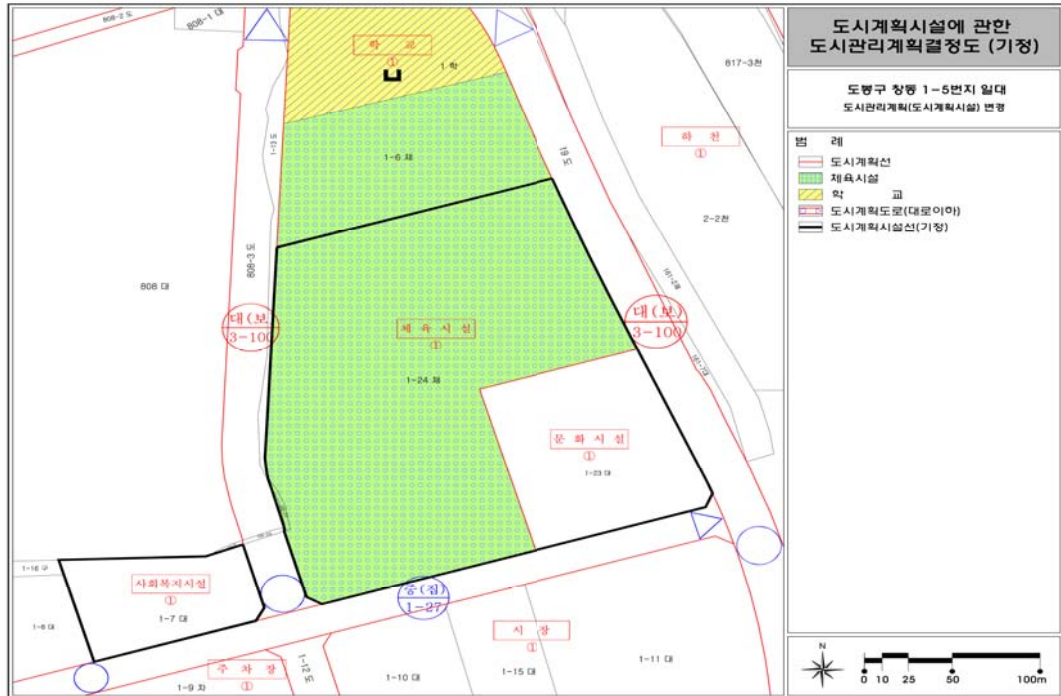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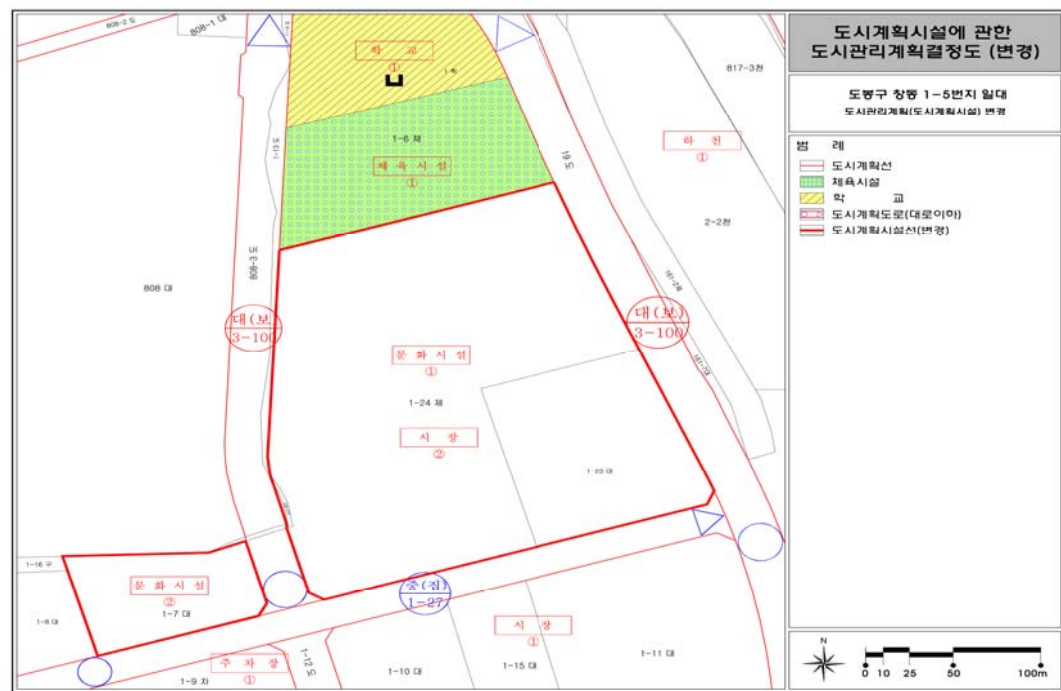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도(변경)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36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7-18	(재)한겨레통일 문화재단 (대표 임동원)	마포구 공덕동 116-25	- 대북지원 (북한어린이 지원)	450 (현금)	전국	'17.2.14~ '17.12.31
						모집등록일~ '17.12.31
2017-19	프레밀리 (대표 정종원)	동작구 동작대로 11길 77	- 다문화 한부모 위기 가정 지원	100 (현금및물품)	전국	'17.2.15~ '17.12.31
						'17.2.15~ '17.12.31
2017-20	(사)위스타트 (대표 송필호)	중구 서소문로 100	- 국내 저소득 가정 아동 대상 개인 맞춤형 역량강화 서비스 (복지, 교육)	400 (현금)	전국	'17.2.14~ '17.12.22
						'17.2.14~ '17.12.22
2017-21	(재)대한정신건강 재단 (대표 정한웅)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 정신장애인 자녀 대상 장학사 업	215 (현금)	전국	'17.2.14~ '17.12.31
						'17.2.14~ '17.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4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변경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변경기간)
2017-22	(재)서울그린트러스트 (대표 지영선)	성동구 서울숲길 53	- 생활권 녹지 확대 및 보존을 위한 도시숲 조성 등	300 (현금및물품)	전국	'17.2.15~ '17.12.28
						'17.3.1~ '18.12.31
2017-23	(사)드림터치포울 (대표 최유강)	서초구 방배로 62	- 교육소의 학생을 위한 학습·진로 멘토링 지원	30 (현금)	전국	'17.2.25~ '18.2.24
						'17.2.25~ '19.2.24
2017-24	(재)영산조용기 자선재단 (대표 조용기)	강남구 언주로 126길 13	- 중증장애인 지원, 국·내외 의료지원사업 등	545 (현금및물품)	국내· 해외	'17.2.15~ '17.12.31
						'17.2.15~ '18.3.31
2015-57-1 (변경)	(재)한국장애인재단	중구 통일로 86, 27	지적장애인을 위한 교육	15 (현금)	전국	'15.5.21~ '15.5.20
						'15.5.21~ '17.5.20 ('15.5.21~ '17.12.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 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66호

2017년도 제4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가. 심의일시 : 2017. 2. 17.(금) 10:00 ~ 12:3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본부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9건 16작품 (조각 9, 회화 5, 부조 1, 미디어아트 1)

라. 심의결과 : 승인 10작품, 부결 6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7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1	용산구 용산호텔	조각	The Neverending Story		○	작품의도 및 작품재료 등이 주변 환경과 부조화
1-2		회화	실버선장의 보물상자	○		
1-3		미디어 아트	몽중몽(夢中夢)		○	작품의 컨텐츠가 다른 작품과 유사함
1-4		회화	심경(心景)	○		
1-5		조각	Metal Marks		○	작품은 좋으나, 호텔건물의 특성상 공간과 부조화
1-6		회화	소요유(逍遙遊)	○		
2	성동구 금호 힐스테이트	조각	몽계구름-1	○		
3-1	은평구 녹번 제1-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각	녹번동 24시		○	동일 요소가 있는 작품이 다수 설치됨
3-2		부조	박석애기+2016		○	작품이 설치되는 위치 및 건물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음

2017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7년 제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4	은평구 은평지웰테라스	조각	구-공존	○		
5	영등포구 대림동 뉴스테이	조각	사랑	○		
6	송파구 아이온스퀘어	조각	내이름은 라온	○		
7	성동구 서울 숲 드리마제	조각	TREASURE		○	조형성 및 시각적으로 부자연스러움
8	강서구 홈쇼핑 사옥	회화	5+4+5	○		
9-1	종로구 종로타워	조각	빛의 소리	○		
9-2		회화	농원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67호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장

1.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 계획

○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시 민속문화재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				
	①산신님	16점	77 × 56.5	1912년	서울 성동구 행당동 128-901 (김옥엽)
	②별상님		77 × 56.5		
	③숲당아가씨		77 × 56.5		
	④대신마누라님		77 × 56.5		
	⑤부군내외		101 × 80	20세기 초	
	⑥태산노군		95 × 58		
	⑦일월성신		102 × 70		
	⑧칠성님		102 × 70		
	⑨삼불제석		102 × 70		
	⑩대사님		102 × 70		
	⑪용궁부인		110.5 × 58.5		
	⑫천존대감		100 × 54		
	⑬관성제군		100 × 75.5		
	⑭최일장군		100 × 66		
	⑮대신할머니		94 × 55		
	⑯오방신장님		124.5 × 97		
서울시 민속문화재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				
	①거사걸립 (거사도걸입안위)	11점	102 × 63	20세기 초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272-2 (전농동부군당 보존회)
	②일산 행렬 (만방청일산도국괴)				
	③삼불제석 (삼불제석안위)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④강남국 호국 별상 마마 (강남국호구별상마마)				
	⑤정열부인 송씨마누라 (정열부인송씨마누하)				
	⑥조선국 공신 조씨대감 (조선국공신조씨대감)				
	⑦대사마 대장군 왕신 (되사마되장군왕신안위)				
	⑧취타 행렬 (전비취타주도국괴)				
	⑨마부1 (마두하청도국괴 1)				
	⑩마부2 (마두하청도국괴 2)				
	⑪매사냥 걸립 (외응만사도청걸립)				

- 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각 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는 대부분 화승의 필법과 도상적인 특징이 나타나며, 전통 탕화와 신경향의 탕화가 만나는 접점에서 이론 다양하고 흥미로운 도상들이 많다. 특히 산신님(1912)은 무신도로는 드물게 기년명이 있고 시기적으로 앞설 뿐만 아니라 근대기 서양화풍으로 그려진 것이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

조선시대 전농동 일대는 농사와 친경(親耕)의식과 그 행렬 등으로 대변되는 왕실 농업문화의 중심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 또한 서울지역 농악관련 일종의 풍속화로서 미술사적인 가치 역시 뛰어나다. 또한 ‘·’ 자모로 쓰여진, ‘존격의 존명’과 ‘특정 장면의 도해(圖解)에 대한 기술(記述)’이 있는 방제는 무신도 연구사에 큰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앞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2. 의견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① 전화 : (02) 2133-2632
- ② 팩스 : (02) 768-8873
- ③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성동구청 문화체육과 (행당동 아기사당 무신도)
- ① 전화 : (02) 2286-5203
- ② 우편 : (04750)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8층
 - 동대문구청 문화체육과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
- ① 전화 : (02) 2127-4159
- ② 우편 : (02565)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6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

행당동 아기씨당은 본당인 아기씨당에 7점의 무신도(좌신장, 삼불제석, 아기씨, 산신, 부군 내외, 태산노군, 우신장)가 봉안되어 있으며, 옆 건물의 개인신당에는 14점의 무신도(일월성신, 칠성님, 삼불제석, 대사님, 산신님, 용궁부인, 숲당아기씨, 천존대감, 관성제군, 최일장군, 별상님, 대신할머니, 대신마누라님, 오방신장님)가 봉안되어 있다. 이 가운데 아기씨당의 2점(부군 내외, 태산노군)을 포함해 개인신당의 14점 모두는 본래 행당동 아기씨당에 봉안되었던 것이 아니라 광진구 자양동 부군당에서 모셔온 것이다.

행당동 아기씨당의 총21점의 무신도는 전통적이거나 개량형 족자로 되어 있다. 보존상태를 보면, 아기씨당의 무신도는 양호하지만, 개인신당 무신도는 심각하다. 육안으로 화면을 관측할 수 없는 것이 많고 화폭안쪽이 그을음과 안료의 색변현상으로 얼룩진 것이 상당수 발견된다. 난곽 밖은 종이나 벽지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것이 많다. 시급히 보존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봉안 장소와 별개로 화풍과 양식적 면에서 매우 다양한 특징이 나타난다. 개인신당의 4점의 무신도(산신님, 숲당아기씨, 별상님, 대신마누라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화승(畵僧)의 필법과 도상적인 특징이 나타나며, 전통 탕화와 신경향의 탕화가 만나는 접점이라 할 수 있는 구한말 탕화의 영향도 함께 나타난다. 도상 및 배경묘사에 선과 색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키고, 유화(油畵)의 질감표현과 함께 금박(金箔)과 금니(金泥)의 사용이 많아 장식성이 두드러진다. 칠보문(七寶紋)의 구슬을 응용한 문양들도 보인다. 또한 구한말에 수입되어 새로운 색감과 화면의 높은 은폐력으로 애용되던 장단(障丹)의 남용과 경향을 같이 해, 주황색이 주조색을 이루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전체 무신도를 제작시기, 화풍과 도상적 특징, 화면의 난곽 구성, 장황 등으로 조사해 보면, A, B, C, D의 네 유형으로 분류된다.

A유형은 아기씨당에 봉안되어 있는 5점의 무신도(좌신장, 삼불제석, 아기씨, 산신, 우신장)로 우신장 무신도의 뒷붙인 종이 위에 병신(丙申; 1956)의 기년명이 있다. 이들 무신도는 수풀당 아기씨당에도 작품이 남아 있는, 석초당(石焦堂) 봉영(琇榮)이나 그와 관련 있는 화승의 작품들로 추정된다. 이들 무신도는 도상이 간략하고 도식화가 진행되어 있으나, 존상표현이 단아하고 보색 대비와 선을 통한 면 분할이 비교적 분명해 화면이 명징하다. 또한 수풀당 무신도에 서처럼 주홍 입술을 통으로 그린 다음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지 않은 묵선(墨線)의 미소선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B유형은 7점으로 아기씨당에 2점(부군 내외, 태산노군)이, 개인신당에 5점(일월성신, 용궁부인, 천존대감, 대신할머니, 오방신장님)이 봉안되어 있다. 주황색을 주조색으로 하고 있으며, 부리부리한 눈과 큼직한 이목구비의 얼굴표현을 비롯해 액자형의 화면 구성 등이 나타난다. 20세기초에 조성된 것이다.

C유형은 개인신당에 봉안된 5점(칠성님, 삼불제석, 대사님, 관성제군, 최일장군)이다. 화면의 난곽 바깥 사방으로 한지나 벽지가 덧대어져 있다. 일부의 얼굴 표현은 초상화 기법을 보는 것처럼 매우 세밀하며 필력과 표현력이 뛰어나다. 옷깃과 의습자락에 갈색선으로 강렬하게 입체적인 선과 주름을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20세기초에 조성된 것이다.

D유형은 개인신당에 봉안된, 1912년 조성의 2점(산신님, 별상님)과 이때에 함께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2점(술당아기씨, 대신마누라님)을 포함해 4점이다. 방제(傍題)란과 화기(畵記)란을 모두 동일한 화면 구성으로 갖추고 있으며 화풍 또한 같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기년명 있는 무신도로는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의 초기 서양화를 보는 것처럼 유화의 질감표현이 강하게 나타나 매우 주목된다.

산신님의 화기는 다음과 같다.

축원」 경성부두」 모면독도」 이계향목」 동거주」 계유생」 니춘의」 장자무신생」 니괴홍」 차자임 자생」 니괴운」 장수발」 원」 임즈십이월」 이십구일」

위의 내용을 풀면 다음과 같다.

축원(祝願)

경성부 두모면(豆毛面) 독도(蘓島 ; 독섬) 이계(二契) 향목동 거주, 계유생(癸酉生 ; 1873년생) 이춘의, 장자 무신생(戊申生 ; 1908년생) 이기홍, 차자 임자생(壬子生 ; 1912년생) 이기운. 장수 발원(長壽發願), 임자(壬子 ; 1912년) 12월 29일.

행당동 아기씨당 무신도는 자양동 부군당에서 모셔온 16점의 무신도를 포함해 총 21점으로, 전통과 근대기 화풍의 접점에서 이룬 다양하고 흥미로운 도상들이 많다. 화승들의 세련된 철선묘(鐵線描)의 운용과 유화질감이 살아 있는 서양화풍의 영향도 나타나는데, 제작시기는 1912년, 1956년 추정, 20세기초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산신님(1912)은 무신도로는 드물게 기년명이 있고 시기적으로 앞설 뿐만 아니라 근대기 서양화풍으로 그려진 것이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전체 무신도는 오랜 역사를 지닌 행당동 아기씨당과 함께 앞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A유형에 해당하는 5점의 무신도(죄신장, 삼불제석, 아가씨, 산신, 우신장)는 조성연대(1956년)가 서울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한 총 16점을 대상으로 한다.

사진자료



①산신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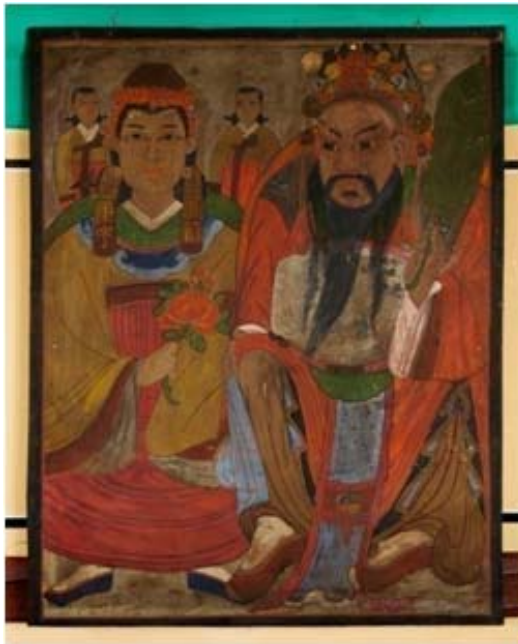
②별상님



③쑤당아가씨



④대신마누라님



⑤부군내외



⑥태산노군



⑦일월성신



⑧칠성님



⑨삼불제석



⑩대사님



⑪용궁부인



⑫천존대감



⑬관성제군



⑭최일장군



⑮대신할머니



⑯오방신장님

<붙임>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

전농동 부군당의 무신도는 기년명은 없지만 20세기초에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서울지역 무신도 가운데 매우 독특한 작품군에 속한다. 6.25를 기점으로 여러 점의 무신도가 사라졌으며, 남아있는 11점의 무신도에는 아래 ‘·’ 자모를 병기(併記)해 흘러 쓴 다음과 같은 방제(傍題)가 있다.

‘거사도결입안위, 만방청일산도국기, 삼불제석안위, 강남국호구별상마마, 정열부인송씨마누하, 조선국공신조씨대감, 디사마더장군왕신안위, 전비취티주도국기, 마두하청도국기 1, 마두하청도국기 2, 외웅만사도청결입’

이 가운데 ‘존격의 존명’이 기록된 5점의 무신도는 무신도의 일반적인 존명 표기의 예에 속하지만, 나머지 6점은 ‘특정 장면의 도해(圖解)에 대한 기술(記述)’이어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6점의 이 무신도 도상은 지금은 살펴볼 수 없는 서울지역 농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농동 부군당의 주신은 ‘부군할아버지’인 조선초의 공신 조반(趙胖)이다. 고려말 토지 개혁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던 조반이 전농동 부군당의 주신으로 모셔진 것도 농사와 무관하지 않다.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었던 조선시대에 전농동 일대가 왕실의 동적전(東籍田)에 속하고, 1909년에 순종황제가 마지막으로 거동해 소를 끌고 친경(親耕)의식을 행한 것을 보면, 비록 무신도 범주 내에서의 도해이지만, 농악의 한 단면이 엿보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아울러 화사가 부군당에 무신도 도상으로 이를 표현한 것은 종교적 성격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도상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다.

왕의 거동이나 신임 헌감(사또) 행차에 영향을 받은 농악은 일반적으로 앞부분이 행렬음악으로 시작하고 뒷부분은 연희 중심이다. 이를 토대로 전농동 부군당의 무신도를 살펴보면, 전배(前陪) 즉, 앞부분인 전배치에 해당하는 대취타 행렬을 표현한 ‘전비취티주도국기[대열 앞쪽[前陪]의 취타주(吹打奏) 행렬 장면을 담은 도국(都局; 神廳)의 깃발 또는 標幟]’은 흥겨운 현장감이 살아 있다. 왕의 거동을 상징하는 일산(日傘)과 금월부(金鉞斧)가 등장하는 ‘만방청일산도국기[萬方 靑日傘 都局 깃발 또는 標幟]’는 자세히 도상을 보면, 왕실 위의인 홍일산(紅日傘)이 아니라 그보다 격이 낮은 청일산(靑日傘)이고, 왕실 위의인 금월부가 나타나서 위의 간의 혼재 양상이 드러나 있다. 기물을 든 이들도 병거지에 미투리를 신고 있어서 역시 민간성격이 짙은 농악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마두하청도국기[馬頭들이 뒷사람을 모시는 下廳의 지위로 행렬에 참가하는 장면이 담긴 神廳의 깃발 또는 標幟]’는 말을 관리하는 ‘마두(馬頭)’들이 말과 함께 행렬에 참여한 것이다.

농악의 후배(後陪) 즉, 뒷부분인 후배치에 해당하는 잡색(雜色)의 연희는 거사와 사당이 등장하는 ‘거사도결입안위[居士徒 乞粒 安位]’, 그리고 매사냥꾼인 양반 수알치와 꿩을 모는 털이꾼이 등장하는 ‘외웅만(방)사도청결입[外鷹坊師 都廳 乞粒]’이다. 방제와 도상으로 보면, 잡색을 맡은 이들이 사설을 주고받는 걸립농악에 해당한다.

전농동 부군당의 무신도는 배경을 채색하지 않고 등장인물 위주로 단순히 그려진 것이지만

감각적인 색채 운용을 엿볼 수 있다. 초록색이 주조색인 화면에 짙은 청색을 사용하면서도 채도가 높은 노란색과 적색을 적절히 대비시켜 전체적으로 밝고 산뜻하다. 종교화에서는 잘 쓰지 않는 기하학적인 당초문의 사용이나 무신도임을 의식해 눈동자의 위치를 임의로 달리한 것도 눈에 띈다. 과거의 전통적이고 익숙한 색채나 문양을 일신해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고자 한 화사의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실내가 아닌 야외를 배경으로 한 무신도 도상들은 인물 표현에서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고 개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연희적(演戲的) 요소와 함께 해학성도 갖추고 있어서 흥미롭다.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가 도상의 구성이나 방제의 내용으로 보면 고격의 것도 담고 있어서 이전의 무신도를 모본으로 다시 제작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현재의 무신도가 20세기초에 활동하던 기량 있는 노화사에 의해 그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조선시대에 부군당이 있는 전농동 일대가 ‘농사’와 ‘친경(親耕)의식과 그 행렬’ 등으로 대변되는 왕실 농업문화의 중심에 있었고, 일부 무신도의 방제와 도상에 반영되어 있는 특징들은 서울지역 농악관련 무신도로서 그 가치를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 일종의 풍속화로서 미술사적인 가치 역시 뛰어나다. 또한 아래 ‘·’ 자모로 쓰여진, ‘존격의 존명’과 ‘특정 장면의 도해(圖解)’에 대한 기술(記述)이 있는 방제는 무신도 연구사에 큰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앞으로 중요 자료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진자료



①거사 결립



②일산 행렬



③삼불 제석



④강남국 호국 별상마마



⑤정열부인 송씨마누라



⑥조선국 공신 조씨대감



⑦대사마 대장군 왕인



⑧취타 행렬



⑨마부 1



⑩마부 2



⑪매사냥 결립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68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장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예정 종별	지정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서울시 유형문화재	성제묘 무신도				
	①관운장 내외	10 점	132 × 92	19세기	서울 중구 방산동 4-96 성제묘 (서울시)
	②관우		95 × 46	조선후기	
	③옥천대사		100 × 51.5		
	④관평		60 × 31.5		
	⑤주창		94 × 52		
	⑥관평과 주창		93 × 57.3		
	⑦마부 1		69 × 100		
	⑧마부 2		164 × 106		
	⑨일월오봉 1		180 × 70	19세기	
	⑩일월오봉 2		170 × 70		
서울시 유형문화재	장충동 관성묘 무신도				
	①관운장	4점	90 × 70	19세기 말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
	②관운장 부인		89 × 71.5		
	③신령		108 × 84.5	20세기 초	
	④장군		113 × 82		

○ 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

■ 성제묘 무신도

관운장 내외 무신도를 중심으로 제작시기가 조선후기와 19세기말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중화원(畫員)에서 민간 화사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선시대 관제(關帝)신앙 무신도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궁중화원들에 의한 무신도는 그동안 민화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기존 무신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제 신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장충동 관성묘 무신도

관성묘 4점의 무신도 中 관우와 관우 부인 무신도는 구한말의 궁중 화원으로 추정되는 화사에 의해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관운장 무신도는 활시위가 상하지 않게 보호구를 끼웠는데 이러한 섬세한 표현은 도상적으로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관우 부인 무신도 역시 당대의 또 다른 미인도로 대표할 만한 도상이라 흥미롭다. 나머지 2점의 무신도는 화격은 떨어지지만 크기로 보아 관성묘의 위상을 보여주는 개성이 강한 도상들이므로 앞으로 관제신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됨.

2. 의견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① 전화 : (02) 2133-2632
 - ② 팩스 : (02) 768-8873
 - ③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중구청 건축과 (장충동 관성묘 무신도, 성제묘 무신도)
 - ① 전화 : (02) 3396-5843
 - ② 우편 : (04558)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성제묘 무신도

주신인 관운장 내외 무신도 1점은 보개(寶蓋)와 신탐(神棚)으로 장엄된 보궁(寶宮) 내에 비교적 온전히 모셔져 있다. 나머지 9점의 무신도는 신탐 앞의 탁자(卓子) 안쪽에 대부분 훼손된 채로 있는데, 현재 긴급 보존처리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성제묘의 무신도의 제작시기는 조선후기와 구한말에 걸쳐 있으며 궁중 화원(畫員)을 비롯해 여러 화사의 다양한 화풍이 나타난다. 비단이나 종이바탕을 비롯해 장황방식이나 크기도 일정하지 않다.

성제묘의 주신인 관운장 내외 무신도는 관성제군(關聖帝君)의 신격에 맞게 족자의 위와 아래로 청색 능화판지 회장(回裝)을 하였고, 각종 문양과 장엄물, 금박 등으로 장식해 정중한 화려함이 있다. 방장에는 중앙의 보개(寶蓋)를 중심으로 두 개의 풍대가 걸려 있고, 고식의 보상화문(寶相花紋) 덩굴무늬들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충동 관성묘 무신도의 관운장 대고(大褲)자락에도 나타나는 것이어서 흥미롭다. 관운장 내외는 감실 안쪽의 화려한 신탐(神棚) 위의 신좌(神座)에 각각 앉아 있으며, 신탐 역시 많은 풍대가 달린 탁의(卓衣)로 둘러져 있다. 각 신격의 성격은 위엄이 넘치는 표정과 자애로운 표정으로 개성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고, 의복 문양도 관우는 칠보문(七寶紋)이고, 부인은 연화문(蓮花紋)이다. 붉은색 곤룡포를 입은 관우와 그 부인의 뒤로는 왕을 상징하는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가 하나의 큰 판 위에 장식적으로 세워져 있다.

옥천대사 무신도는 관우의 사부인 옥천대사를 모신 것이다. 흰 고깔을 쓴 맑고 기품 있는 옥천대사가 흰색 도포를 입고 섬세한 조각의 흰 석좌(石座) 위에 앉아 있다. 전체적으로 담백한 백묘(白描)로 선을 쓰고 색을 최소화 했으나, 청홍색의 방석, 붉은 옷고름, 붉은 비단 내의, 화려한 가죽신으로 화면에 강렬한 대비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관우, 관평, 주창 무신도는 관우와 관평, 주창을 각기 개별적인 화폭(畫幅)의 무신도로 그린 것이어서 흥미롭다. 삼존상(三尊像)처럼 독립적인 신앙 형태로 분화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관평은 관우와 함께 참살 당했고, 주창은 이 소식을 듣고 자결했기 때문에 같이 모셔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관우와 주창 무신도는 화사가 같고, 관평 무신도는 공필(工筆)로 그려진 것으로 화사가 다르다.

관평과 주창 무신도는 앞의 관평 무신도처럼 공필로 그려진 것으로 도상표현이 매우 정치하고 금니문양도 화려하다.

특히 관우, 관평도는 도화서 화원급의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며, 현재 걸린 관우부부상보다 훨씬 뛰어난 화격을 보여주어 주목된다.

마부1은 무신도로는 보기 드물게 가로로 긴 그림이다. 주신인 관운장 내외 무신도에서 볼 수 있는 청색 능화판지 회장(回裝)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다소 거친 필선으로 마부들의 얼굴을 표현했지만 고졸함이 살아 있고, 옷자락 선의 강약과 굵기를 달리 하며 생동감 넘치는 묘법(描法)을 구사하고 있다. 붉은 얼룩 반점이 있는 적토마의 길고 풍만한 꼬리는 매듭져 묶여 있으며, 마구(馬具)는 왕의 마구를 갖추었다.

마부2는 위의 마부1 무신도와 화풍은 다르지만, 채찍을 쥐고 적토마를 몰고 가는 마부의 눈 흰자위 위에 서린 형형한 푸른 안광은 매우 독특한 개성이 있으며 화면을 압도하기에 충분하

다.

일월오봉도 1, 2 무신도는 민화풍의 그림이다.

성제묘(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호)의 총10점의 무신도는, 보개와 신탕으로 장엄된 보궁에 봉안된 관운장 내외 무신도를 중심으로 제작시기가 조선후기와 19세기말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중화원(畫員)에서 민간 화사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선시대 관제(關帝)신앙 무신도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무신도에서 궁중화원들에 의한 궁중 화풍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민화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기존 무신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제신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진자료



①관운장 내외



②관우



③옥천대사



④관평



⑤주창



⑥관평과 주창



⑦마부1



⑧마부2



⑨일월오봉1



⑩일월오봉2

<붙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장충동 관성묘 무신도

관운장과 그 부인을 그린 무신도 2점은 19세기말 궁중 화원(畫員)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무신도의 백미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선과 색의 정지함이 뛰어나며 화려한 장식성이 돋보인다.

관운장 무신도의 방장에는 옅은 자주색의 주름 명암이 드러나 있다. 방장 아래에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검은색 긴 수염을 쓰다듬고 있는 관운장의 얼굴은 붉은 대추빛에 봉황의 눈을 하고 있으며, 윤곽선 중심에 바림채색으로 얼굴의 요철이 깊이 있게 드러나 있다. 의자에는 호피가 둘러져 있고 족대에는 동자주들이 늘어서 있다. 왼손에는 무언가 잡고 있는데 자루 이외 부분은 옷자락 속에 숨겨져 있어 정확히 무엇인지 미상이다. 관운장의 중요 무기는 등에 찬 화살통과 함께 왼무릎에 기대인 활이다. 활에는 활시위가 상하지 않게, 매듭이 있는 보호구를 끼웠는데, 이러한 섬세한 표현은 도상적으로 유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흥미롭다.

전복(戰服)인 갑옷의 형태는 전형적인 무장의 도상표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금니(金泥)의 미늘을 비롯해 칠보문, 연화문, 화문 등의 각종 비단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그런데 두무(兜鍪)표현은 구한말의 신중탱 등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어서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다. 갑투를 비롯해 대철(帶鐵), 근철(筋鐵), 개철(蓋鐵), 보주(寶珠)와 삼지창을 고분돋움으로 금니를 도드라지게 올렸다. 옆드림은 미늘로 단순히 표현하지 않고 크고 둥근 하나의 원 주위에 작은 원들이 감싸고 있도록 표현했는데, 이 역시 고분돋움의 금니이다. 대철 위에는 반으로 접혀진 여의두문(如意頭紋)을 청홍의 보색 대비로 둘러싸고, 붉은 상모(象毛)가 두무 전체를 특징적으로 덮고 있다. 현재 도교국립박물관에 소장된 고종황제의 조선대원수 두무와 비교해 보면, 종교화로서의 도상적인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당대의 고종황제 두무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도상이다.

관운장 부인 무신도도 궁중 화원의 절정의 기량이 엿보이는 작품이다. 고운 정제미, 화려한 비단 문양을 비롯해 고분돋움의 금니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의자에 앉아 공수하고 있는 관운장의 부인은 마치 귀부인의 초상화처럼 기품과 위엄이 넘친다. 세 마리의 봉황이 있는 머리 장식을 하고 있으며 큰 죽잠과 용잠 두 개를 꿗고 있다. 부인의 뒤에는 한 마리의 봉황 머리 장식에 한 개의 봉황잠을 꿗은 여인이 서있다.

화면의 앞쪽에는 큰 가재에 전모(氈帽)를 쓴 여인들이 폭이 좁은 소매에 풍성한 치마를 입고 두 손을 공수한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왼쪽은 연분홍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고 있으며, 오른쪽은 녹색 삼회장 저고리에 빨간 치마를 입고 있다. 전모는 조선시대 행렬도에 나타나는 의녀(醫女)나 기행나인(騎行內人)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여인은 한 폭의 미인도로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도상이 당대의 또 다른 미인도로 대표할 만하며, 또한 무신도라는 영역에서 표현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신령과 장군 무신도 2점은 앞의 무신도들과 달리, 20세기초에 활동하던 민간화사에 의해 그려진 것이다. 흰색 곤룡포를 입고 있는 신령은 백옥장식의 선추가 달린 부채를 들고 있는데, 일명, 이태조 계통의 무신도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도상이다. 얼굴 표정은 굵고 짧은 선으로 단호한 성품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무사 무신도는 말 고삐를 잡은 사람과 큰 청룡도를 든 두 사람이 표현하였는데, 말이 마치 고삐를 잡은 무사의 등에 짊어 맨 듯 표현된 것에서 전문화가

가 아닌 민간화공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관우 부부상의 크기와 완성도에 미루어 볼 때 원래 관성묘에는 뛰어난 그림이 여러 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화풍 무신도 2점의 크기를 볼 때 후대 추가로 제작된 여러 점의 그림이 있었으나 지금 단 네 점 밖에 전래하지 않는 점이 아쉽게 생각된다.

관성묘(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6호)에는 4점의 무신도가 남아 있다. 관우 무신도는 현존하는 관우 초상이나 무신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무장으로서의 위풍당당함뿐만 아니라 관성제군(關聖帝君)으로서의 고귀한 신격이 19세기의 궁중 화원(畵員)으로 추정되는 화사에 의해 화려하고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 관우 부인 무신도 역시 동일인에 의해 그려진 매우 희귀한 도상이다. 관우부인은 귀부인의 초상화와 같은 사실적인 얼굴 표현에 기품과 위엄이 넘치며, 전모를 쓴 여인들은 한 폭의 미인도를 보는 듯한 아름다운 도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20세기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2점의 무신도는 화격은 떨어지지만 크기로 보아 관성묘의 위상을 보여주는 개성이 강한 도상들이다.

이들 4점의 무신도는 제작시기와 화사가 다르지만, 관성묘의 현존하는 무신도로서 일괄로 보존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관제신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진자료



①관운장



②관운장 부인



③신령



④장군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7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7-25	(사)한국아시우호재단 (대표 최재성)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3길 11	- 아시아 도서 출판, 교육, 조사·연구 사업	500	전국	'17.3.1~ '17.12.31
						'17.3.1~ '19.2.28
2017-26	(사)누가선교회 (대표 김성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4길 12	-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진료 서비스 지원	90	전국	'17.2.21~ '18.2.19
						'17.3.1~ '19.2.28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82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부동산개발업체 등록취소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7년 3월 2일 ~ 2017년 3월 23일(20일간)
2. 공고방법 : 공보 및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게시판
3. 공고의 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통지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법령	처분일자
1	서울100100	범신종합건설(주) (대표: 이관연)	강남구 도산대로 312(논현동) (등기:성동구 아차산로11길 11, 307호(성수동2가))	부동산개발 업의 등록취소	등록요건 미달 (부존재 및 전문인력 미충족 등)	부동산개발업 법 제4조, 제25조	2017.1.19.
2	서울110016	남명건설(주) (대표: 남명호)	영등포구 선유로 146, 1310호 (양평동3가, 이앤씨드림타워)	부동산개발 업의 등록취소	등록요건 미달 (부존재 및 전문인력 미충족 등)	부동산개발업 법 제4조, 제25조	2017.1.19.
3	서울110038	옥토종합건설(주) (대표: 이영수)	양천구 남부순환로 514, 304호(신월동)	부동산개발 업의 등록취소	등록요건 미달 (부존재 및 전문인력 미충족 등)	부동산개발업 법 제4조, 제25조	2017.1.19.
4	서울110051	주암건설(주) (대표: 이원상)	서초구 서초중앙로 63-8, 2층(서초동, 복산빌딩)	부동산개발 업의 등록취소	등록요건 미달 (부존재 및 전문인력 미충족 등)	부동산개발업 법 제4조, 제25조	2017.1.19.
5	서울120026	인정건설산업(주) (대표: 이성준)	성동구 아차산로 33, 8층(성수동1가) (등기:동대문구 청계천로 433, 1302호(신설동))	부동산개발 업의 등록취소	등록요건 미달 (부존재 및 전문인력 미충족 등)	부동산개발업 법 제4조, 제25조	2017.1.19.
6	서울120036	(주)모스퍼실리티 (대표: 오정현)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0(구로동)	부동산개발 업의 등록취소	등록요건 미달 (전문인력 미충족 등)	부동산개발업 법 제4조, 제25조	2017.1.19.

나. 등록증 반납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

다.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등록취소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 다만, 부동산개발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부동산개발업법 제26조 제1항)

라. 부동산개발업 제한 :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원인행위자와 대표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부동산개발업법 제6조 제5호)

마.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18호

동물유기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공모 공고

유기동물 발생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동물등록 및 중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 및 홍보하여 동물 유기를 예방하고 동물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공모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 11월 말까지

나. 사 업 비 : 50백만원

다. 주요내용

- 재개발 예정지역 대상 주민교육 및 홍보 활동
- 동물보호 시민토론회 개최

2. 응모자격

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수의사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식품부에 설립허가(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중 주소재지가 서울인 단체

3. 사업설명회

가. 일 시 : '17. 3. 2. 16:00~18:00

나. 장 소 : 본관(신청사) 동물보호과

다. 내 용 : 사업배경 및 목적,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4.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접 수 일 : 3. 22. 09:00~18:00

나. 접수방법 : 동물보호과 방문접수

다. 문 의 : ☎ 02-2133-7648(배진선)

※ 우편 및 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붙임1)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법인(단체) 대표 인감증명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 보조금 시스템 (<http://ssd.wooribank.com/seoul/>)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5. 사업단체(법인) 선정 및 협약 체결

가. 선정일자 : '17.3.22.(예정)

나. 선정방법 : 동물보호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 단체별로 사업계획 발표(10분, 5분 질의응답)후 최종심사

다.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동물보호활동실적(10) : 최근 3년간 실적
- 참여인력의 전문성(10)
- 사업계획(30)
-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30)
- 예산의 적정성(20)

라. 세부 심사기준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 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 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선정 단체 수와 지원 금액은 동물보호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 기준 : 평가 기준중 아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 ▶ 1. 사업계획부문, 2. 사업수행 및 관리능력, 3. 예산의 적정성

마. 결과발표 : '17. 3.23(예정)

※ 평가 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 단체(법인)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6. 선정단체 협약체결

가. 체결기간 : '17. 3.23. ~ 3.28

나.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협약체결

- 최종사업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관리통장 등 구비
- 협약서는 공증을 받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단체는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한 책임은 응모 단체에게 있음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5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20호(2015.7.24.)로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 작성 고시된 강서구 마곡동 739번지의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 명칭 :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다. 공사완료 현황

- 부지면적 : 2,636㎡
- 건축면적 : 2,153.82㎡ (건폐율: 81.71%)
- 연 면 적 : 7,878.39㎡ (용적률: 218.46%)
- 주차대수 : 200대
- 층별개요(※ 건축물대장 표기방식에 따름)

층 별	구조	용도	면적(㎡)	비 고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2,119.69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1,609.96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176.76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자전거주차장	310.00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1,870.34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1,791.64	

라. 공고방법 : 시보에 게시

마.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2133-2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 광진구고시 제2017-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내무부 고시 제413호(1958.2.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7호(2016.1.14.)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7-74호(2017.2.2.)로 열람공고한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저촉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공원녹지과(☎02-450-777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2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76-119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 : 3,858㎡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따로 붙임

사. 열람장소 :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450-777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지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광진구 중곡동 176-119	임야	3,858	3,858	임야 공원	학교법인 일송학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94-195				

◆ 광진구고시 제2017-20호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1호(2012.05.03)로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광진구 중곡동 157-6호 등 6필지 지구단위계획(공동개발) 및 군자역 1,2번 출입구와 중곡동 649-6호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충연결로 설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광진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광진구 중곡동 157-6호 등 6필지 공동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합리적 토지 이용 및 개발을 촉진하고
-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대상지내 침상형 공지계획을 반영하여 군자역 1,2번 출입구와 본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충연결로를 신규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결정하고자 함.

2.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번호	필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E	중곡동 157-11호	231.4	• 공동개발권장: 157-13, -14, -15
		중곡동 157-13호	115.7	• 공동개발권장: 157-11, -14, -15
		중곡동 157-14호	162.0	• 공동개발권장: 157-11, -13, -15
		중곡동 157-15호	162.0	• 공동개발권장: 157-11, -13, -14
		중곡동 157- 6호	279.0	• 공동개발권장: 157-7
중곡동 157- 7호		463.1	• 공동개발권장: 157-6	
변경		중곡동 157-11호	231.4	• 공동개발권장: 157-13, -15
		중곡동 157-13호	115.7	• 공동개발권장: 157-11, -15
		중곡동 157-15호	162.0	• 공동개발권장: 157-11, -13
		중곡동 157-14호	162.0	• 공동개발지정: 157- 6
		중곡동 157- 6호	279.0	• 공동개발지정: 157-14
		중곡동 157- 7호	463.1	• 단독개발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	6.5	특수 도로	6.5	중곡동 672	중곡동 649-6	지하도로 (지하충 연결로)	•천호대로 지하부 일부 중복결정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 입체적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입체적 결정규모				비고
			폭(m)	연장(m)	높이(m)	면적(㎡)	
신설	도로 (지하도로)	중곡동 649-6	6.5	1.4	11.0~16.0 (해수면기준)	9.1	

■ 도로 결정 사유서

구분	기점	종점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신설	중곡동 672	중곡동 649-6	- 천호대로(광로1-5호) 하부에 지하도로 신설 - 지하도로(지하층연결로) - B=6.5m, L=6.5m - 일부구간 입체적결정 - B=6.5m, L=1.4m, A=9.1㎡	-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상 대상지내 침상형 공지계획을 반영하여 (서울시고시 제2012-111호, 2012.05.03.) - 군자역 1,2번 출입구와 본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층연결로를 신규 설치하는 사항 임.

3.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450-768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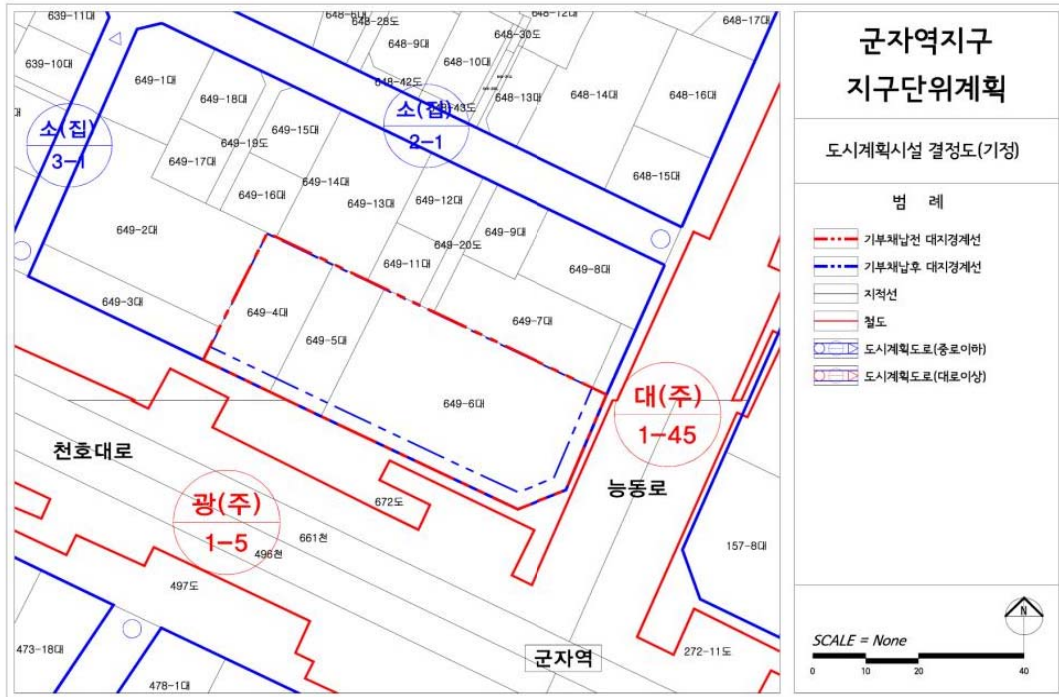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군자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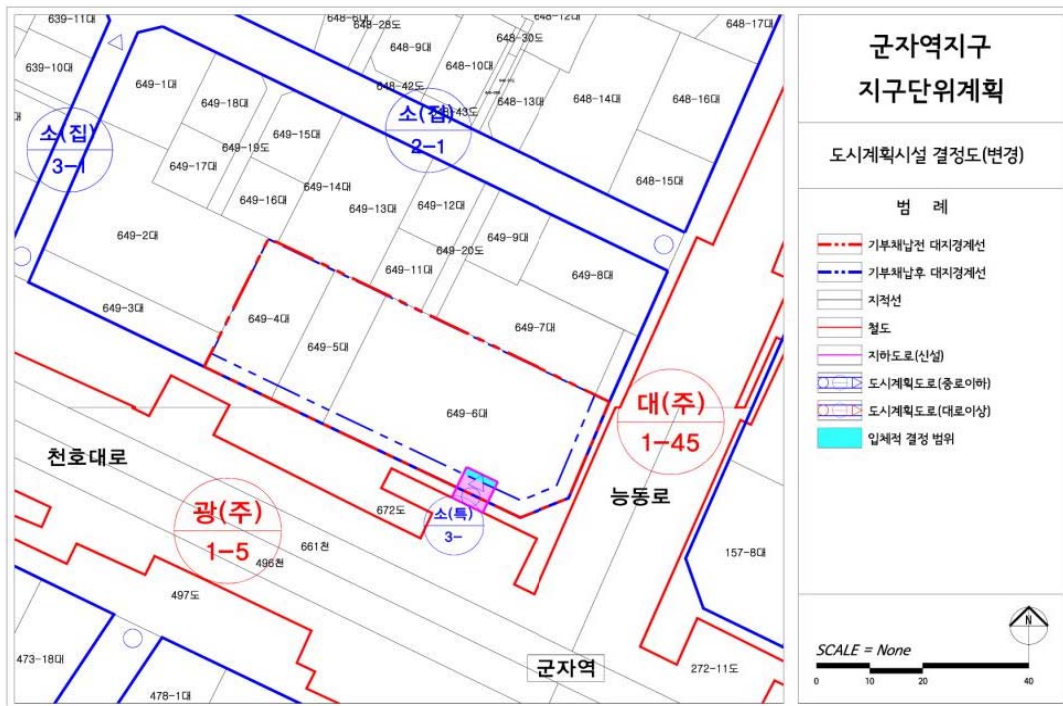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결정도 : 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결정도 : 변경



◆ 도봉구고시 제2017-24호

도시계획시설[둘리(쌍문)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08.0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7-22호(2017.01.2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봉구 쌍문동 산 238-14번지 일대 둘리(쌍문)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091-37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2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산238-1 등 3필지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둘리(쌍문)근린공원 조성

라. 사업의 내용 및 규모

- 면 적 : 22,651㎡
- 내 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 ~ 2019.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 따로 붙임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091-3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22,651	22,651							
1	쌍문동 신238-1	임야	3,463	3,463	홍성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 12동 504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	쌍문동 신249	임야	13,785	13,785	박정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80길 6-23, 102동 702호 (도봉동, 동아에코빌아파트)	1/3	주식회사 하너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2가)(도산로지점)	근저당권	
					이은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50길 50, 211동 203호 (교덕동, 레미안힐스테이트고덕)	1/3				
					임영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래비로 416번길 118	1/3				
3	방학동 신190-3	임야	5,403	5,403	전제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월로 79, 504-201 (상현동, 만월마을 5단지 아이파크)					

◆ 마포구고시 제2017-3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768호(1964.01.24.)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마 포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540	대흥동 50-2	대흥동 338	일반도로	1964.1.24. (건설부 제768호)	
폐지	소로	2	-	8	국지도로	171	대흥동 50-2	대흥동 140-5	일반도로	"	
변경	소로	2	-	8	국지도로	136	대흥동 261-3	대흥동 405-2	일반도로	"	
변경	소로	2	-	8	국지도로	173	대흥동 328-9	대흥동 338-5	일반도로	"	

2. 지형도면의 작성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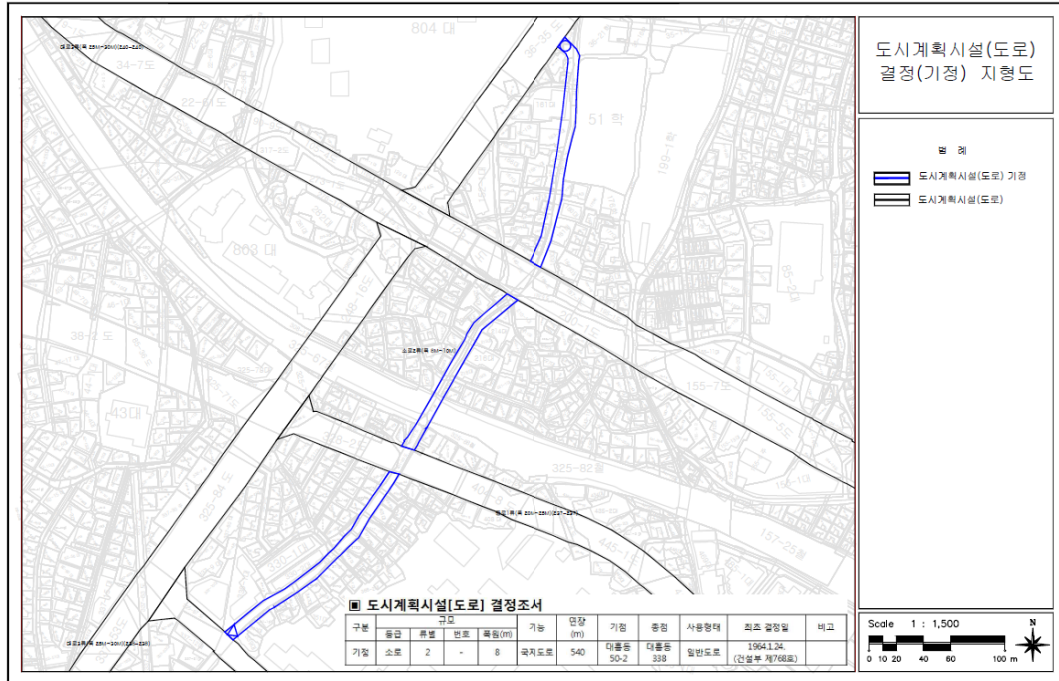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3153-935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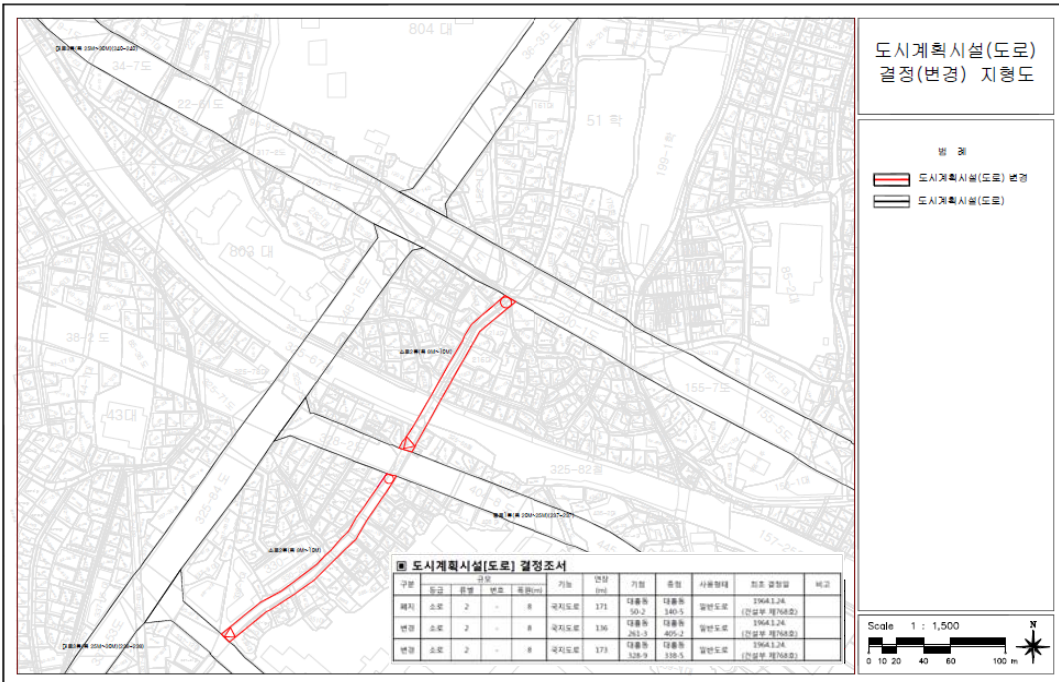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기정



○ 변경



◆ 강서구고시 제2017-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강서구고시 제2001-24호(2001.04.02)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설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16-1376호(2016.11.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한 『강서구 방화동 642-3~644-1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서구 방화동 642-3~644-1간

나.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명 : 강서구 방화동 642-3~644-1간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규모 : 도로개설(B=8m, L=35m)

마. 사업시행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 성 명 : 강서구청장

바.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17.12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 붙임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도로과(☎2600-69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공사명 : 방화동 642-3 ~ 644-1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방화동 642-3	답	149	86	이순복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8길 67, 101동 702호(방배동, 방배자이아파트)	1/1				
2	방화동 642	답	31	31	"	"	1/1				
3	방화동 644-1	답	6	6	최재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56, 102동 2002호(정자동, 상록마을)	1/1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공사명 : 방화동 642-3 ~ 644-1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방화동 642-3	펜스	철	15.3㎡	15.3㎡	박태진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42-4	1/1				

위 치 도

사 업 명 방화동 642-3~644-1간 도로개설공사



◆ 강서구고시 제2017-1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6호(1976.08.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설치를 위하여 “강서구공고 제2017-178호(2017.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한 『강서구 방화동 186-3~186-3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서구 방화동 186-3~186-3간

나.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명 : 강서구 방화동 186-3~186-3간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규모 : 도로개설(B=10m, L=50m)

마. 사업시행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 성 명 : 강서구청장

바.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17.12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 붙임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도로과(☎2600-69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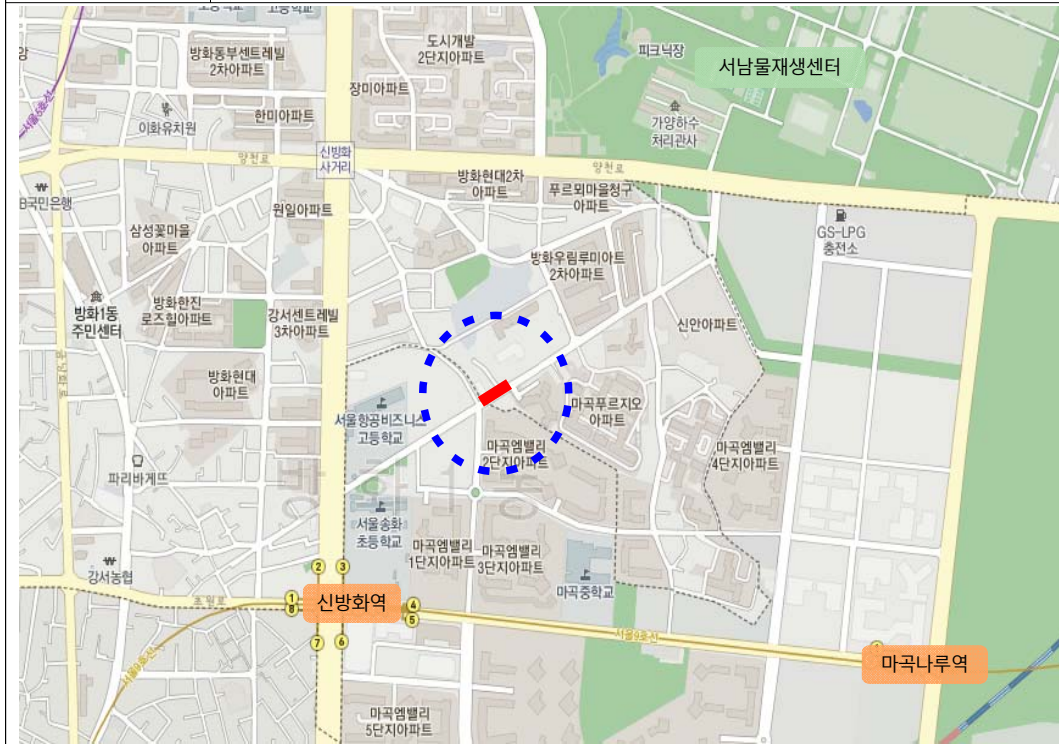
사업시행자 : 강서구청장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공사명 : 방화동 186-3 ~ 186-34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방화동 186-18	답	18	18	서울특별시		1/1				
2	방화동 186-2	도로	318	318	서울특별시		1/1				
3	방화동 186-17	도로	8	8	서울특별시		1/1				
4	방화동 186-16	도로	4	4	강서구		1/1				
5	방화동 186-33	전	145	145	서울특별시		1/1				
6	방화동 186-34	도로	2	2	서울특별시		1/1				

위 치 도

사 업 명	강서구 방화동 186-3~186-3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규모	도로개설(B=10m, L=50m)



◆ 강남구고시 제2017-2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42호(2002.02.20.)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6-139호(2016.10.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공고 제2017-151호(2017.01.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의견청취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2-5번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2-5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역삼동 712-5번지 도로개설사업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6m, 연장 3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0.03.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아. 관계서류등 상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도로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로관리과(☎3423-6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강남구 역삼동 712-5	대	1,199.9	180.0	이기선	서울시 강남구 현릉로 590길 88 리엔파크4단지 403동 701호	대한토지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517 아셈타워26층	신탁	

◆ 강남구고시 제2017-3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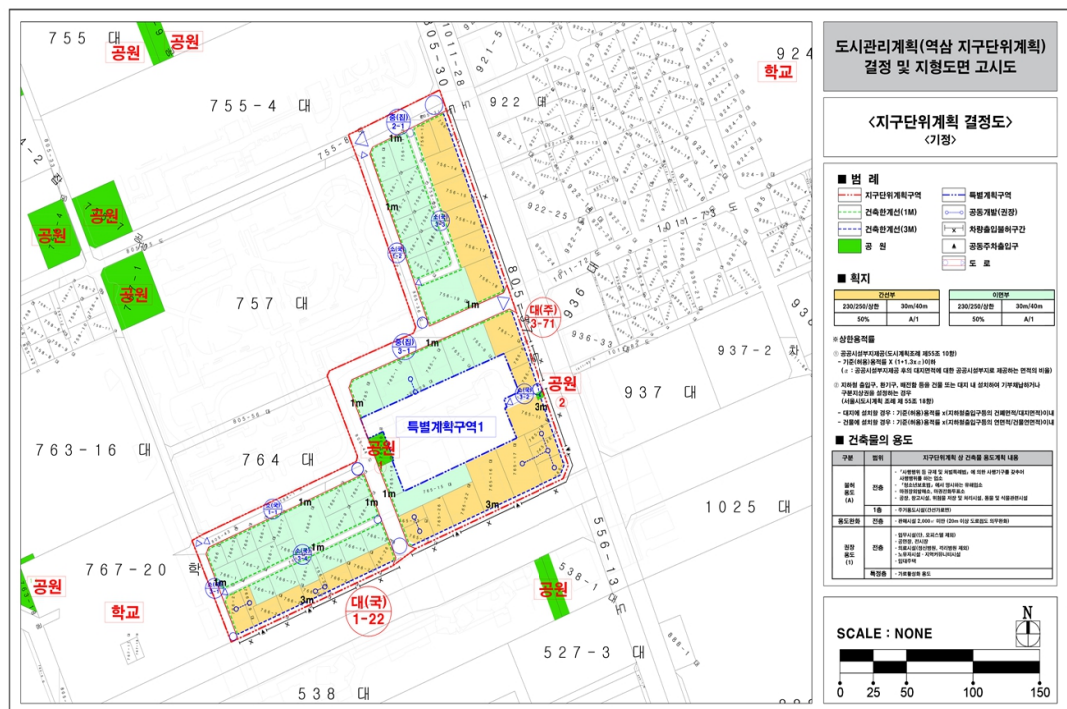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역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405(2016.12.15.)호로 고시한 바 있는 “역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결정조서와 고시도면이 상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68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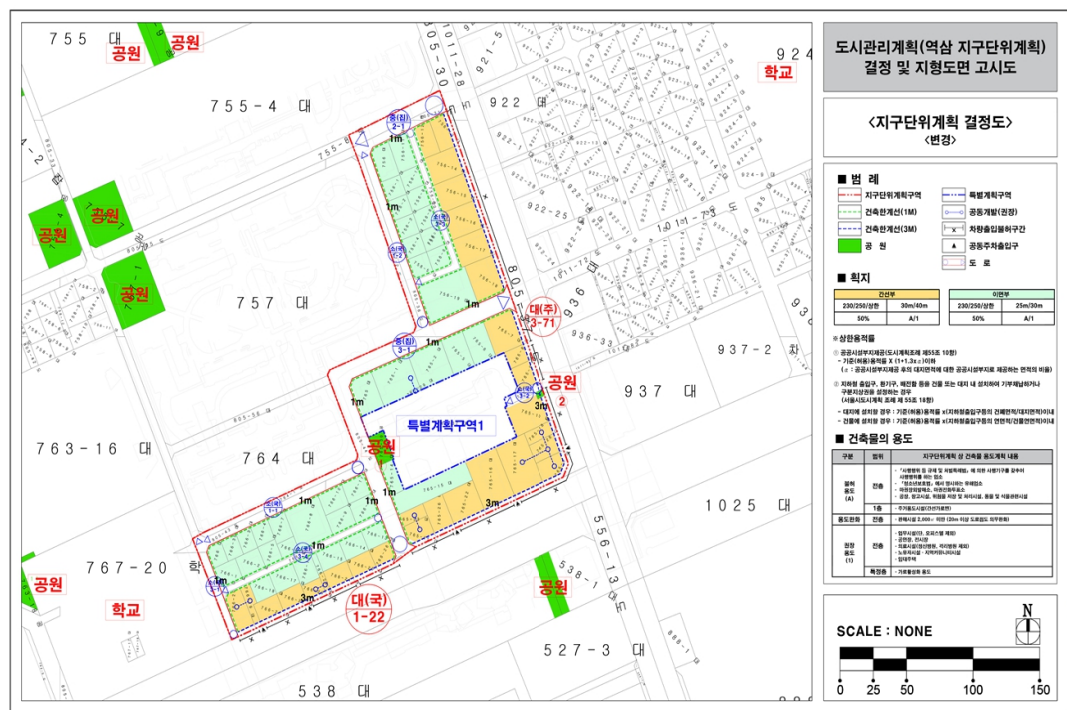
2017년 3월 2일
강 남 구 청 장

1. 정정사유 : 역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착오.
2.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 역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 정정사항 외 변경없음.
 -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관계서류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13)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정정전



□ 정정후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17-19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 청취 공고

내무부 고시 제413호(1958.2.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7호(2016.1.14.)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되었으며, 광진구 고시 제2017-19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 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광진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176-119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용마도시자연공원 조성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 : 3,858㎡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2. 열람장소, 열람기간

가. 열람장소 :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나. 열람기간 : 2017. 3. 2. ~ 2017. 3. 15. (14일간)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7. 3. 2. ~ 2017. 3. 15. (14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공원녹지과(☎02-450-77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공고 제2017-217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81호(1982.9.20)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2008-428호(2008.11.2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으로 공원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2호(2013.12.19)로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3월 2일
강 북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강북구 번동 산23번지 외 3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017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 다.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토지보상)
- 라. 규 모 : 토지보상 20,683㎡
- 마. 사업의 시행자 : 강북구청장
-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년간
-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 별첨 조서
- 아. 토지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조서
- 자.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차. 열람장소 : 강북구청 푸른도시과
-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푸른도시과(901-6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2017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연 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 용	
1	4필지 빈동 산23	임야	55,310	20,683								
2	미아동 산25-1	묘지	33,676	10,814	2분의1		강남구삼성로14435동101호 (개포동주공아파트)	박재금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142	옥과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3	미아동 산25-16	묘지	86	86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썬동103호	이재환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4	미아동 산25-22	묘지	7,944	3,725	2분의1		종로구구기동154-3건덕빌라 썬동103호	이재환				
					2분의1		성동구성수동1가685-696 갤러리아포레102-1302	이영환				

◆ 강북구공고 제2017-231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7.)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561(1987.8.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결정으로 공원결정 및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55호(2004.8.10.)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3월 2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북구 미아동 산108-5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017년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다.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토지보상)

라. 규 모 : 토지보상 4,529㎡

마. 사업의 시행자 : 강북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년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 별첨 조서

아. 토지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조서

자.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차. 열람장소 : 강북구청 푸른도시과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푸른도시과(901-6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2017년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내용	
1	미아동 산108-54	임야	4,529	4,529	1필지							
							강남구 서초동 20-1 삼익아파트 1-307	김순자				
							서초구 서초동 20-1 삼익아파트 1-307	김본기				
							동대문구 장안동 322-1 삼성연립 나-205	전병희				
							동대문구 장안동 322-1 삼성연립 나-205	박정준				
							서초구 원지동 402-1	김창례				
							서대문구 연희동 351-1 미도빌라 3-203	이숙현				
							성북구 석관동 340-393	남궁춘화				
							송파구 풍납동 326-4 태양연립 다-2	양문복				
							강남구 일원동 688 공무원아파트 906-502	이삼랑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계	내용	
					4529분의 92.57		동대문구 휘경동 42-1	김영숙					
					4529분의 109.09		안양시 만안구 인양동 97-3 진흥아파트 127-1205	홍양표					
					4529분의 231.39		안양시 만안구 인양동 97-3 진흥아파트 127-1205	백임순					
					4529분의 108.16		종로구 명륜4가 127-21	채규성					
					4529분의 99.17		도봉구 창4동 주공아파트 1902-702	남궁유나					
					4529분의 99.14		강남구 삼성동 38-9 501호	김진영					
					4529분의 105.78		성북구 정릉동 239 정릉풍림아이원아파트 116-1402	윤숙자					
					4529분의 125.62		중랑구 양원역로12길37(망우동)	최성자					
					4529분의 214.94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5 선경아파트 103-205	이원영					
					4529분의 107.9		송파구 오금동 2 대림아파트 1-404	강정민					
					4529분의 33.06		영등포구 신길동 339 신미아파트 라-504	우종인	2016.4.18.입류 (38세 금정수과-9328)	서울특별시		압류	
									2012.7.17.입류 (주차문화과-15924)	영등포구		압류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계	내용	
					4529분의 185.11		원주시 개운동 581-1 휴먼시아원주개운1단지 102-201	임상욱					
					4529분의 105.79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48, 506-1001 (강변마을 월드메르디앙)	최지연					
					4529분의 109.09		구로구 시흥동 911-16	우정석					
					4529분의 216.06		구리시 교문동 220-4	장정숙					
					4529분의 115.7		송파구 잠실동 27 아파트 528-207	백재영					
					4529분의 323.96		강남구 대치동 902 동아아파트 가-506	정우택					
					4529분의 215.8		도봉구 쌍문동 525	박명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4	(주) 동아상 호신용금고	근저당		공동담보
					4529분의 96		종량구 면목동 181-20	신철성	2007.5.18압류(세무과-11226)	서울특별시 강북구	압류		
					4529분의 115.7		광명시 너부대로45번안길1, 비01호 (광명동 신진빌라)	박신현	2006.9.28가압류 결정(2006가단6035)	의정부농업 협동조합	압류		

◆ **강북구공고 제2017-240호****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

1. 건설교통부고시 제738호(1963.12.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6-108호(2016.7.7.)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6-187호(2016.12.29.)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아래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강북구청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 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비고
오패산로 접속도로 개설	강북구 미아동 245-73번지 외 2필지 일대	폭 12m~16m 연장 40m	강북구고시 제2016-187호 (2016.12.29.)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로관리과(☎901-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오패산로 접속도로 개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미아동 245-73	임야	449.5	449.5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123-5	보승사					도로선형 일부변경에 의한 추가
2	미아동 245-74	대지	0.8	0.8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123-5	보승사					도로선형 일부변경에 의한 추가
3	미아동 245-75	대지	72	72	서울시 도봉구 미아동 123-5	보승사					도로선형 일부변경에 의한 추가

□ 위치도



◆ 은평구공고 제2017-2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이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9.)로 결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2008-397호(2008.11.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서울시 고시 제 2011-234호 (2011.8.1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된 신사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신사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련 내용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용할 물건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3월 2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98-52번지 등 2필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신사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주요내용 : 토지보상 1,625㎡

라. 사업시행자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17.12.31.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사. 열람장소 : 은평구청 공원녹지과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공원녹지과, ☎ 351-80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계		1,625	1,625		-	-	-	-	
신사동 98-52	잡	962	962	사회복지법 인빛과소금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19-3				
신사동 98-54	잡	663	663	사회복지법 인빛과소금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19-3				

◆ 마포구공고 제2017-192호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작성을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181호(1966.2.5)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91호(2009.10.8) 도시계획시설(공원,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폐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2010.2.18)로 성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된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작성을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3월 2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조성 사업

나.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도시계획사항	사업기간
도시계획사업(공원) -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	마포구 성산동 산11-1번지	○ 사업의종류 - 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 규모 : 3,600㎡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고시 -최초:건설부고시(제2181호) (1966.2.5) -최종:서울특별시고시(제391호) (2009.10.8)	사업실시계획 작성고시일로부터 2018.12.31

다. 사업시행자 : 마포구청장

라. 열람기간 : 2017. 3. 2. ~ 2017. 3. 16.

마.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02-3153-9553)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물건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공원녹지과, ☎02-3153-9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면적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 지 조 서

연 번	소 재 지 (위 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지분)
	동	번지					성 명	주 소(등기)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계				13,103	3,600							
1	성산	산11-1	임야	13,103	3,600	임야 (경로당· 이동식화장실 부지, 산책로 등으로 사용)	학교법 인한양 학원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 토지의 손실보상은 상기 토지 중 경로당·이동식화장실 부지,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분할 후 보상할 예정임

◆ 송파구공고 제2017-260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천마공원(대체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303호(2016.10.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천마공원(대체공원)조성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송파구 마천동 산1-4번지 일원(천마근린공원)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천마근린공원(대체공원)조성

다. 사업시행면적 : 153㎡

라.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 9. 30까지

바. 열람공고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공원녹지과(☎2147-3380) 또는 LH서울위례단지사업2부(☎031-786-6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내역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 관계	
1	산1-4	임		3,404		153	153	강정순 외1인	서울 송파구 마천동 237-1	서울측 산업협 동조합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4 (하월곡지점)	지상권	
소계						153	153						

◆ 강동구청고 제2017-28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동의 의견 청취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47호(2013. 5. 1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6-1329호(2016. 11.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 2016-183호(2016.12.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된 「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 청취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둔촌동 102-3, 강동구 둔촌동 105-44,
강동구 둔촌동 105-45, 강동구 둔촌동 107-5,
강동구 둔촌동 108-57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명칭 : 둔촌동 105~105-3(둔촌마을)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4~6m, 연장 103m

마.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바.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2018. 12. 31일 까지

2. 열람 및 주민의견 제출방법

가. 열람기간 : 공고한 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3)

다.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의견서 제출

※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로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도로과(☎02-3425-6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청고 제2017-28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5호(2006.5.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329호(2006.9.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암사역사공원과 관련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3월 2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92번지 외 10필지

나.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 사업

라. 사업의내용 : 공원조성(토지보상)

마. 규 모 : 토지보상 16,412㎡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3425-64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계	11필지		16,412	16,412						
1	192	전	2,061	2,061		이순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130-27, 507동 203호(범박동, 부천범박힐스테이트5단지)			3/7	
						이재석	경기도 오산시 권리사로 71, 301호(권동, 명석빌딩)			1/7	
						이하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1, 102동 504호(동천동, 행림마을진로아파트)			1/7	
						이순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227, 507동 1003호(수내동, 푸른마을)			2/7	
2	137-2	전	1,432	1,432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76(암사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3	197	전	6,474	6,474	심우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로35길 73-10, 301호(천호동, 푸른솔)				
	4	135-2	대	329	329	김경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108길(암사동)				
	5	135-3	전	988	988	김경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108길(암사동)				
	6	139-4	임	242	242	이종수	4428 N. 14th ST. TERRE HAUTE, IN 47805				
	7	188	대	865	865	심인숙	1030 N. Broadway Evereu WA 18201				
	8	135	전	2,885	2,885	정병임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 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761.17/ 2885	
						조규희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 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799.83/ 2885	
						정병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2 길 5, 209동 1103호(송파동, 가락삼익맨션)			662/2885	
						정병욱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1 길 38, 704호(명일동, 동양타 워아파트)			662/2885	
	9	137-9	전	992	992	이정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659(자양동)			5/9	
						전영기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77번길 8(소양로2가)			2/9	
						전순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659(자양동)			2/9	
	10	138-4	전	72	72	권일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65 길 82-12, 2층(둔촌동)				
	11	139-7	임	72	72	이종수	4428 N. 14th ST. TERRE HAUTE, IN 47805				

지장물 조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분		소 유 자		용도	구 조	비고
						성명	주 소			
	계									
	1	135-2	건물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90.66㎡	김경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108 길(암사동)	근린생활 시설 단독주택	경량철골구 조	
			단독주택		30.28㎡					
	2	192	비닐 하우스	비닐하우스	4동	이순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130-27, 507동 203호(범박동, 부천범박힐 스테이트5단지)	농업용	파이프 비닐	
						이재석	경기도 오산시 궤리사로 71, 301 호(궤동, 명석빌딩)			
						이하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1, 102동 504호(동천동, 행림마 을진로아파트)			
						이순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227, 507동 1003호(수내동, 푸 른마을)			
	3	197	비닐 하우스	비닐하우스	11동	심우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5길 73-10, 301호(천호동, 푸른솔)	농업용	파이프 비닐	
	4	135	비닐 하우스	비닐하우스	10동	정병임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 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 트레지움아파트)	농업용	파이프 비닐	
						조규희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 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 트레지움아파트)			
						정병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2길 5, 209동 1103호(송파동, 가락삼 익맨션)			
						정병욱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1길 38, 704호(명일동, 동양타워아파트)			
	5	137-9	비닐 하우스	비닐하우스	4동	이정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659 (자양동)	농업용	파이프 비닐	
						전영기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77번길 8 (소양로2가)			
						전순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659 (자양동)			

물건(수목) 조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주)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주 소	성 명	
1	137-2	가이즈까향나무	H3.5*W1.8	3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76 (암사동)			
		감나무	H2.0*R4	2					
		개나리	H1.0*7가지	5					
		공작단풍	H1.5*R4	1					
		꽃복숭아	H1.0*W0.6	11					
		꽃복숭아	H1.2*W0.8	4					
		꽃복숭아	H1.2*W1.0	63					
		꽃사과	H4.0*R25	1					
		남천	H1.2*5가지	2					
		능소화	L2.5*R4	3					
		대추나무	H2.0*R6	10					
		대추나무	H2.0*R4	3					
		매화나무	H3.0*R8	27					
		매화나무	H2.5*R6	16					
		모과나무	H2.0*R4	12					
		밤나무	H3.0*R6	1					
		배롱나무	H1.5*R6	33					
		백철쭉	H1.5*W1.0	17					
		사철나무	H1.5*W0.5	190					
		서양측백	H3.0*W1.0	20					
		소나무(둥근형)	H1.0*W1.2	413					
		소나무(조형)	H1.6*W0.8*R6	178					
		소나무(조형)	H1.8*W0.8*R8	62					
		소나무(조형)	H2.0*W0.8*R8	26					
		수수꽃다리	H2.0*W1.0	50					
		수수꽃다리	H4.0	2					
		앵도나무	H1.2*W0.6	23					
		앵도나무	H1.5*W0.8	25					
		앵도나무	H2.0*W1.5	2					
		영산홍	H0.3*W0.3	304					
		영산홍	H0.5*W0.6	120					
		영산홍	H1.0*W1.2	246					
		옥향	H0.4*W0.5	12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주)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주 소	성 명	
1	137-2	왕벚나무	H2.0*B6	4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76 (암사동)			
		왕벚나무	H2.0*B8	1					
		왕벚나무	H2.0*B5	5					
		왕벚나무	H3.0*B7	2					
		왕벚나무	H2.0*B4	3					
		왕벚나무	H6.0*B15	13					
		왕벚나무	H6.0*B10	6					
		왕벚나무	H6.0*B18	3					
		자두나무	H10*R46	1					
		자목련	H10*R36	1					
		조팝나무	H1.2*W0.6	40					
		주목(선주목)	H1.5*W0.8	8					
		주목(선주목)	H2.0*W1.0	8					
		주목(선주목)	H2.5*W1.2	6					
		취퐁나무	H1.2*W0.3	200					
		진달래	H1.2*W1.2	10					
		청단풍	H2.0*R4	20					
		장미	3가지	5					
		홍단풍	H2.5*R20	1					
		황금촉백	H0.4*W0.3	18					
		황금촉백	H0.6*W0.4	51					
		황금촉백	H0.8*W0.5	46					
		황금촉백	H1.0*W0.6	5					
		회양목	H0.3*W0.3	29					
		회양목	H0.4*W0.6	38					
		회양목	H0.4*W0.5	1000					
		회양목	H0.6*W1.0	2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3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췁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 649-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 8척 (기선 2척, 부선 6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7.3.1. ~ 2017.3.31.	2017. 2.27.

사업소공고

◆ 한성백제박물관공고 제2017-15호

2017년 유물구입 공고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전시·연구·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니 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한성백제박물관장

1. 구입대상유물
서울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선사~고려시대 유물 및 관련 자료(서적, 사진, 금석문 탁본 등)
※ 백제 관련 유물 우선 구입
2. 참가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등
※ 도굴품 및 도난품 등 불법문화재와 문화재 관련사범은 매도신청 불가
※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체명으로 매도신청 할 것
3. 서류접수기간 : 2017년 3월 6일(월)부터 3월 10일(금)까지
※ 방문접수시간 : 평일 09:30~11:30, 13:30~17:00(토·일요일 제외)
4. 신청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유물과학과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올림픽공원 내)
5.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유효함)
6. 신청서류
 - ① 자료매도신청서 및 매도신청자료 명세서 (소정양식 :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각 1통
 - ②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③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통
 - ④ 유물칼라사진(3"×5") 2매(사진파일을 CD에 저장한 것도 가능) 또는 디지털 파일
※ 컴퓨터파일로 매도신청서와 유물사진을 작성한 경우, 별도의 매체(CD 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할 것
7. 유물접수 : 신청서류 및 유물사진을 검토한 후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하여 유물을 접수함
※ 실물접수기간 : 2017. 3. 20(월) ~ 3. 24(금)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구입유물선정 및 가격평가 : 한성백제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및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평가에 의함
※ 구입예정유물은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9. 구입결정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은 매도희망자와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10. 소유권이전 : 유물매매약정 체결 후, 대금지급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한성백제박물관으로 이전됨

11. 기타사항

-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②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며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반환 시 유물접수증 필 지참)
-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성백제박물관 유물과학과(02-2152-5931)로 문의바람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2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2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1-24~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9-121
 - 면 적 : <당초> 영구 10,157㎡, 일시 15,288㎡
 <변경> 영구 10,276㎡, 일시 16,92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광복교~안양교 주변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안양교 신설
 - 내 역 :

당 초	변 경
- 가교(L=300,B=7.5m), 공사용 가도 1개소(L=123m) - 기존교량 철거 (L=265m,B=22.5m) 및 재설치 (L=275m,B=31.3~37.3m)	- 좌 등 - 좌 등 - 상수도(D=900mm, L=140m) 이설, 압입추진 및 도달구 1식

5. 점용기간(공사기간) : 허가일~영구(2016.10.17.~2019.09.3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33호

하천점용(일시·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일시·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55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312-2번지 일원(312, 312-1, 312-2번지)
 - 면 적 : 1,269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소 기자재 운송을 위한 임시 선착장 및 가설도로 설치
 - 내 역 : · 임시 선착장(지주 H-Pile, 보받침 H-Beam, 주형보 I-Beam) : B=8m, L=10m
· 가도설치 B=8m, L=53.89m 등
5. 점용기간 : 2015.09.30.~2017.12.31.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